

# 변리사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2016. 12



특허청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 정 책 연 구 용 역 결 과 보 고 서

연구과 제명	(한글) 변리사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주관 연구기 관	기 관 명	소재지	대 표
	(사)한국 규제학회	서울특별시 노원구 광운로 20 광운대학교 한울관 709호	김 주 찬
주관 연구책 임자	성 명	소속 및 부서	전 공
	김 진 국	배재대학교 기업컨설팅학과	경제학
연구기 간	2016년 10월 14일 ~ 2016년 12월 31일 (2개월17일)		
연구비	일금 이천육백삼십육만삼천육백삼십원정 (₩26,363,630)		
참여연 구원	5명(책임: 1명, 연구원: 4명)		

2016년도 정책연구과제의 최종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붙임: 1. 최종보고서 50부.  
2. 최종보고서 수록파일 1부.

2016년 12월 26일

주관연구책임자      김 진 국      인

주관연구기관장      김 주 찬      직인

특허청장 귀 하

# 제 출 문

특 허 청 장 귀 하

본 보고서를 “변리사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6년 12월

- 주관연구기관명 : (사) 한국규제학회
- 연구기간 : 2016년 10월 ~ 2016년 12월
- 연구책임자 : 김진국 교수
- 참여연구원
  - 연구원 : 이혁우 교수(배재대)
  - 연구원 : 윤성일 박사(연세대)
  - 연구원 : 박경순 박사(한남대)
  - 연구원 : 손지은 박사(서울대)

## <차 례>

I. 변리사 시장의 환경변화와 변리사의 역할 변화 .....	1
1. 지식재산권을 다루는 변리사 시장의 환경변화 .....	1
1) 국부의 원천이 지식재산권으로 이동 .....	1
2) 지식재산권 활용 및 축적 위한 변리사 역할 매우 중요 .....	1
3) 변리사제도는 지식재산 관련 서비스 인프라 및 기술경쟁의 중추 .....	2
4) 변리업무의 시장상황 변화 .....	2
5) 변리사 공공성 강화의 중요성 대두 .....	3
2. 변리사 시장현황 변화에 따른 변리사 역할 변화 .....	4
1) 변리서비스 시장 다변화에 대한 대응 필요 .....	4
2) 변리사의 전문성 제고와 수반되는 공공성 강화 중요 .....	4
3) 변리사의 공익적 역할 및 윤리의식 강화 요구 증대 .....	5
II. 변리사의 공공성 강화 당위성 쟁점 .....	7
1. 변리사 직무의 기본성격과 공공성 .....	7
1) 변리사 직무활동의 기본 성격 .....	7
2) 변리사 업무의 공공성에 기초한 수행 .....	7
3) 변리사 업무의 전문성과 공공성 관계 .....	9
4) 변리사 직무활동의 상업적 성향 .....	9
5) 변리사 업무의 전문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일정 부분 규제 필요 .....	10
6) 변호사법에서 제정한 공공성과 윤리성 강조 부문은 변리사의 공공성 강화 위한 방향 제시 .....	11
7) 변리사 업무의 공공성 강화 위해 변리사 업무의 기본 성격에 맞는 제도 개선 필요 ..	12
2. 변리사법의 목적 조항 개정 및 사명 조항 신설 .....	12
1) 공공성 강화 위한 변리사법의 목적 및 변리사의 사명 개정 필요 .....	12
2) 개선 방안 .....	13
3) 타 자격사법과 비교 분석 .....	17
III. 변리사의 공공성 강화 이슈: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쟁점 .....	18
1. 변리사 공공성 강화 위한 세부 이슈 및 연구 방향 .....	18
1) 변리사 공공성 강화를 위한 세부 이슈 .....	18
2) 변리사 공공성 강화를 위한 세부 연구 쟁점 .....	18

2. 변리사 공공성 강화 개선 방안 및 쟁점 분석 .....	19
1) 변호사 등 타 자격사와의 협업 강화 .....	19
2) 변리사 업무영역 확대 .....	20
3) 변리사 공익활동 의무화 .....	22
4) 변리사의 자치권 확대 .....	23
5) 변리사의 권리·의무 개선 .....	24
6) 변리사 징계 강화 .....	26
<b>IV. 변리사의 공공성 강화 세부 제도개선 방안 .....</b>	<b>28</b>
1. 변리사 업무영역 명확화 .....	28
1) 현황 및 문제점 .....	28
2) 개선 방안 .....	28
3) 기대 효과 .....	29
2. 변리사의 공익활동 의무화 방안 .....	29
1) 변리사의 공익활동 개요 .....	29
2) 변리사의 공익활동 의무화 조항 .....	30
3. 변리사의 권리·의무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 .....	39
1) 현황 및 문제점 .....	39
2) 변리사의 권리·의무 개선 방안 .....	40
4. 전문성 제고 위한 변리사 실무수습 및 의무연수 강화 .....	87
1) 현황 및 문제점 .....	87
2) 개선 방안 .....	88
3) 기대 효과 .....	88
5. 전문성 강화 위한 전문변리사 제도 도입 필요 .....	88
1) 현황 및 문제점 .....	88
2) 개선 방안 .....	88
3) 기대 효과 .....	89
6. 변리사회의 자치권 확대 방향 .....	89
1) 현황 및 문제점 .....	89
2) 개선 방안 .....	90
3) 검토 사항 .....	90
<b>[참고문헌] .....</b>	<b>92</b>

<별첨 차례>

[별첨 1] 변리사 관련 민원 현황(광고 관련) .....	94
[별첨 2] 변리사 관련 민원 현황(부실대리 관련) .....	94
[별첨 3] 징계 종류 및 사항 .....	98
[별첨 4] 변리사 광고 사례 .....	100

# I. 변리사 시장의 환경변화와 변리사의 역할 변화

## 1. 지식재산권을 다루는 변리사 시장의 환경변화

### 1) 국부의 원천이 지식재산권으로 이동

지난 세기 말에 이미 우루과이 라운드를 통해 WTO의 설립으로 인해 경제·경영의 글로벌화가 가속화되고 기술의 발달로 인한 정보화의 속도는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더불어 디지털 기술패러다임의 급속한 변화와 함께 국부의 원천이 기술·지식 등을 포함하는 지식재산권으로 이동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21세기 들어 경제·경영의 글로벌화는 한층 더 가속화되고 있으며 디지털기술의 발달로 인해 경제사회 전 부문의 정보화는 대중이 상상하는 이상으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종래 제조업에서 대세를 이루어왔던 기계공업 중심의 국부의 원천이 전기·전자산업을 바탕으로 한 정보통신기술 중심의 기술패러다임의 급속한 변화로 기술, 상표, 디자인 등을 다루는 지식재산권 확보가 선진제국의 중요한 전략적 관심사항으로 등장하여 국부의 원천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높은 산업 경쟁력과 안정적인 경제 성장 실현을 위해서 각국은 자국 내에서 개발되는 신기술 등을 적절하게 보호, 활용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그 기반이 되는 지식재산제도의 중요성은 한층 더 부각되고 있다.

### 2) 지식재산권 활용 및 축적 위한 변리사 역할이 매우 중요

정보·기술 중심 사회에서 지식재산권제도를 활용하고, 사업자 등이 전략적으로 권리를 취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변리사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더욱 크게 주목을 받고 있다. 이를 위해 변리사는 지식재산권 취득 및 활용을 위한 핵심적 역할 담당자로서 그

질적·양적 충실성이 더욱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 3) 변리사제도는 지식재산 관련 서비스 인프라 및 기술경쟁의 중추

변리사 제도는 지식재산관련 서비스 인프라의 중추로서 최근 법학전문대학원체제의 출범으로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들의 대량 배출과 한미 FTA 협정체결로 인한 법률시장의 개방으로 변리사 제도를 둘러싼 외부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산업구조가 지식재산 중심으로 급속히 개편되면서 기업의 지식재산권 전략수립, 운영컨설팅분야에 대한 새로운 수요가 급증하는 등 변화하는 과정에 있다.

금세기 들어 기업 간 경쟁은 기술경쟁과 이에 따른 특허전쟁의 시대로서, 지식재산은 국부형성을 위한 노동, 자본, 자원 이외의 제4의 원천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과학기술과 지식재산법무에 두루 능통하여 국내외에서 전개되는 지식재산관련 소송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R&D 및 기술투자 등을 지식재산권 전략과 접목시킬 수 있는 지식재산권 전문인력의 지속적 함양은 우리경제의 생존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전쟁의 시대에 즈음하여 이를 뒷받침할 변리사의 전문성 함양과 더불어 변리사 직무의 공공성 강화는 서로 보완성 유지가 필요한 매우 중요한 성질이다. 본 연구에서는 변리사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어느 부문에서 어떠한 정책적 법적 뒷받침이 필요한지 분석한다.

### 4) 변리업무의 시장상황 변화

지식재산권 전문가의 지속적 증가 현상은 변리업무의 시장상황 변화 중 가장 눈에 띈다. 변리업무를 제공하는 전문가는 향후 급격하게 늘어날 전망이다. 매년 200명의 새로운 변리사가 기존의 변리사 시험을 통해 배출되고 있으며, 여기에 추가로 이공대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의 특허 변호사들이 변리서비스를 2012년부터 제공하여 그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현재 변리서비스 시장에서는 그동안 서비스의 주종을 이루었던 전통적 출원업무가 감소하는 특징이 나타난다. 지금까지는 한국 기업들이 원천 특허 이외에도 방어적 차원에서 많은 수의 특허를 출원 등록하는 전략을 실행해왔으나 경쟁행태가 전환되어 특허출원도 양에서 질로 전환을 시도하여 사업 경쟁력에 필수적인 특허들을 선별하여 특허출원 등록을 하는 추세로 변환되고 있다.

국내 변리사들의 전통적 출원업무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시장상황은 변리사들로 하여금 새로운 업무 영역을 개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항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변화하는 특허출원수요 및 변리업계에 대한 사회적 요구로 인한 시장상황의 변화는 변리업계에도 새로운 서비스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특허출원 방식이 글로벌기업 간 경쟁방식에서 특허의 질을 중심으로 경쟁전략을 실행하고 있어 기존에 막대한 특허 등록을 바탕으로 특허 포트폴리오를 소유하고 있는 외국의 기업들이 경쟁 기업들을 상대로 특허 침해소송을 제기하고 강제적 라이선싱을 통해 수익을 얻으려는 방향을 꾀하고 있는 것이 시장상황 변화의 큰 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변리업계에서도 우리기업들이 해외기업과의 특허 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질 높은 인재 양성의 필요성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 5) 변리사 공공성 강화의 중요성 대두

변리업무의 시장 상황 변화와 함께 변리사의 상인성에 기인한 보수 체계 보다 변리업무의 중요성에 따른 변리사의 변리업무가 출원의뢰인 및 사회에 영향을 미쳐 변리사의 공공성 강화가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대두되었다.

이것은 단순히 변리사의 공익활동을 강화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어서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스템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 다루어야 할 영역을 살펴보고 타 전문가격사, 특히 변호사의 경우를 세밀히 분석하여 변리사에게 요구될 공공성 문제를 분석하기로 하자.

## 2. 변리사 시장현황 변화에 따른 변리사 역할 변화

### 1) 변리서비스 시장 다변화에 대한 대응 필요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변리서비스 시장은 특허출원·분쟁 증가에 따라 변리사의 역할에 대한 요구가 기존 출원·심판 대리인에서 기업 지재권 전략수립 전문가로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까지 국내 변리사는 출원·소송대리 등 한정된 시장에서 출혈 경쟁을 할 뿐 다변화되는 지재권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반도체 배치설계, 저작권, 무역·통관, 종자산업법, 부정법 등으로 지재권 업무범위가 확대되어 이에 대한 대응은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로스쿨 도입으로 인한 변호사 공급 증가와 더불어 특허전문 변호사의 증가로 일반변리사와의 경쟁 심화가 예상되고 있다.

### 2) 변리사의 전문성 제고와 수반되는 공공성 강화 중요

종래의 기계공업 기술 중심에서 디지털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통신 기술로 급격히 변화하는 시점에서 글로벌 특허전쟁의 심화, 법률시장 개방 등으로 인해 변리사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변리사 업무영역이 복잡·다양화되는 등 급변하는 지식재산서비스 시장 환경변화에 부응하여 변리사의 전문성 제고는 매우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변리서비스의 경우 전문성 결여 시 변리서비스 의뢰인 및 사회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매우 커진다는 점에서 현재와 같은 글로벌 특허전쟁이 점증되는 시점에서는 변리사의 전문성 제고와 이에 수반되는 변리사의 공공성 강화는 사실상 보완관계를 갖게 되는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게 된다.

### 3) 변리사의 공익적 역할 및 윤리의식 강화 요구 증대

연구개발을 주업무로 하는 많은 벤처의 출현과 창업의 일반화로 인해 무료출원·특허분쟁지원사업 수요 급증 등 지재권 전문가로서 변리사의 공익적 역할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sup>1)</sup>.

이러한 변화는 변리서비스 시장에 존재해 온 악습에 대한 제재 및 시장 질서유지 기능 강화를 위해 변리사의 윤리 의식 및 징계 강화 필요성의 증대도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

변리서비스 시장에 존재해 온 문제 중 하나로 지적되어 온 것으로 변리사가 자신의 비전문분야 수입 후 명세사 등 변리사 아닌 자에게 업무의 대부분을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업계 관행이고, 심지어 수입 사건을 다른 특허사무소로 재하청하거나 변리사 아닌 자와 동업하는 경우도 있어왔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다.

또한 변리사법상 윤리 의무와 징계 및 처벌 규정이 변호사 등 타 자격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약하고 비리 조사를 위한 제도도 미흡하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지적되고 있다.<sup>2)</sup> 아래 변리사법 제17조(징계)는 이러한 사실을 잘 나타내고 있다.

---

1) 대한변리사회의 무료변리 관련 상담 : 1,346건('11)

2) 변리사에 대한 역대 징계현황 : 총 47건('74~'11)

변리사법 제17조(징계) ① 특허청장은 변리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를 할 수 있다.

② 변리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견책

2.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2년 이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업무정지

4. 등록취소

③ 변리사회는 회원인 변리사가 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그 변리사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징계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더불어 대한변리사회가 내리는 징계가 거의 실효성이 없어 자율적인 회원관리가 미흡하다는 것이 문제점 중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고<sup>3)</sup> 변리사의 비위 사실에 대해 특허청에 징계를 요구하는 사례도 없어<sup>4)</sup> 변리서비스 시장에서 수요자의 기대에 부응하고 시장질서 유지 기능 강화를 위해 변리사의 공공성 강화는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이다.

3) 대한변리사회 징계위원회의 징계처분: 경고, 3년 이하의 피선거권 제한, 제명

4) 변리사 징계와 관련하여 변리사회가 특허청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나, 변리사회 미가입자 및 의무연수 미이수자 징계 요구 이외의 불성실 대리 등 일반 비위에 대해서는 징계 요구가 없었음

## II. 변리사의 공공성 강화 당위성 쟁점

### 1. 변리사 직무의 기본성격과 공공성

#### 1) 변리사 직무활동의 기본 성격

이진수 변리사(2015)에 의하면 변리사는 위임인과의 개별적인 신뢰 관계에 기초하여 개개 사건의 특성에 따라 지식재산권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관련 법률지식을 활용하여 지식재산권의 창출, 권리화, 심판, 소송에 관한 대리행위와 관련 사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변리사의 업무 활동은 일반적으로 상인의 영업활동에서 허용되는, 간이 또는 신속하고 외관을 중시하는 정형적인 영업활동을 벌이고 자유로운 광고 및 선전활동을 통하여 영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영업소를 통하여 인적 및 물적 영업기반을 자유로이 확충하여 효율적인 방법으로 최대한의 영리를 추구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sup>5)</sup>.

#### 2) 변리사 업무의 공공성에 기초한 수행

변리사법 제2조(업무)에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鑑定)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한다”라고 그 지위를 천명함으로써 제1조(목적)에서 이미 밝힌 ‘변리사 제도를 확립하여 발명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산업재산권 제도 및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위해 대리하는 업무에 대해 변리사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공성에 기초하여 독립적이고 자유롭게 업무를 수행하되 대리인으로서 윤리성도 함께 갖추어야 함을 밝히고 있다.

이것은 변리사의 영리추구활동은 공공성이라는 테두리, 다시 말해

5)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마334 결정 참조

법 목적 내에서 엄격히 제한되어야 하며, 그 직무에 관하여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이 강조되어야 하는 당위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특허 등 출원인의 심판 및 소송에 관한 대리행위는 이러한 공공성과 윤리성이 담보되지 아니하고서는 변리서비스 소비자인 출원인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는 데 기인한다.

정태인(2012)은 ‘공공성이란, 사적으로 실현할 수 없는 공적 가치를 공론장에서 숙의민주주의 방식으로 합의하여 공공가치 행정의 방식으로 조달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우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공공성의 대상이 되는 재화와 서비스에 관해 어떤 공공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인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일이다. 이후 시장실패론 등 산업구조를 분석하여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공공성의 특징을 파악하여 적절한 해결책을 선택해야 한다. 또한 공공성이라고 해서 언제나 공공경제 혹은 국가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특정 재화나 서비스, 산업분야에서 공공경제와 시장경제, 그리고 사회경제의 최적 조합을 의식적으로 찾아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시장을 통해 그 가치가 충분히 발현되지 못할 경우 발현 가능하도록 규제 등으로 행정의 방식을 통해 도달함을 말한다.

변리사가 공공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서 기업이 일상적인 제품 혹은 서비스를 생산함에 있어서 소비자에게 믿을 수 있고 안전함을 바탕으로 한 최고의 가치를 제공할 때 1차적 사회적 책임을 수행한다는 의미에서 공공성을 이행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변리사에게 요구되는 공공성 강화도 일반 기업의 물품 혹은 서비스 생산 시 요구되는 믿을 수 있고 안전성을 바탕으로 한 최고의 가치를 제공하는 제품인가와 같은 맥락에서 인식할 필요가 있겠다. 즉, 변리사가 출원인에게서 의뢰받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의 출원 업무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출원인의 요구사항을 최선의 방법으로 이행하는가에 따라 변리사의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논거라고 할 수 있다.

변리사가 출원인의 요구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할 경우 의뢰한 출원인은 자신이 노력해온 결과물에 대해 따로 하소연할 수 있는 길이 사실상 막혀 있어 출원인의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는 의미에서의 공공성 강화는 지식재산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 3) 변리사 업무의 전문성과 공공성 관계

변리사 직무활동의 공공성과 업무의 전문성과 관계는 매우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전문자격사로서의 직업윤리가 공공성 형성의 기반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전문자격사로서 고도의 전문성 없이는 건강한 직업윤리가 발현되기 어렵고 더불어 건강한 공인의식 역시 나타나기 어렵다. 따라서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은 공공성 강화는 사상누각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 4) 변리사 직무활동의 상업적 성향

전문자격사인 변리사의 직무 활동은 상업적 성향이 매우 강한 것으로 일반인에게 인식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변리사는 전문자격사 중 수입규모로 1위라고 알려져 상업성만으로 평가받아 온 것이 사실이다. 변리사가 유상의 위임계약 등을 통해 영리를 목적으로 그 직무를 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도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사실이다.

현행 변리사법 제1조 목적 규정에 의하면 변리사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변리사 제도를 확립하여 발명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산업재산권 제도 및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는 공공성과 윤리성이 강조되는 전문자격사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많은 경우 이러한 변리사의 기본 목적이 쉽게 간과되어 왔고, 변리사 내부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은 크게 부각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변리사 직무활동의 공공성 이슈는 매우 인접한 전문자격사인 변호사에게 요구되는 공공성 이슈와 비교했을 때 많은 차이가 있어 왔다고 할 수 있으며 다른 전문자격사인 법무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및 관세사와 비교했을 때에도 일정하게 거리가 존재해왔다는 것이 세간의 인식임을 부정하기 어렵다

#### 5) 변리사 업무의 전문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일정 부분 규제 필요

변리사는 지식재산 및 지식재산권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와 관련된 법률지식을 함께 활용하여야 하는 고도의 전문가로서 변리사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가 법제화될 필요에 관해서는 지속적으로 강조해도 결코 과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변리사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가 법제화되지 않을 경우 변리사의 전문성은 물론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매우 높은 직업윤리뿐만 아니라 공공성도 달성하기 어렵다고 사료된다. 물론 변리사의 전문성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변리사 자격 획득에 매우 높은 진입장벽을 쌓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변리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필수적인 지식과 소양을 갖추었다는 객관적인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다양한 전문가의 진입을 일부러 막을 필요는 전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과도한 수임으로 인해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면 전문성 확보를 어렵게 하는 것으로서 일정 부분 규제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어떻게 제재할

것인가(제재 주체와 제재 크기)와 비록 전문성은 확보되었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통념상 받아들이기 힘든 상업성 위주의 대리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재는 어떻게 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이러한 제 문제에 대한 해답을 구하고 변리사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변호사 및 타 전문자격사 사례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이들 타 전문자격사의 사례를 연구하고자 한다.

#### 6) 변호사법에서 제정한 공공성과 윤리성 강조 부문은 변리사의 공공성 강화 위한 방향 제시

변호사는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이 강조된 대표적인 전문자격사로서 변호사법에서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어떤 규정을 두고 있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으며, 변리사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변호사법은 변리사법이 개정되어야 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이를 살펴 보면 아래와 같다.

변호사의 징계는 징계위원회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변호사법 제92조), 징계위원회는 대한변협과 법무부에 각각 두도록 하고 있다 (동법 제92조). 또한 변호사의 징계혐의사실조사를 위하여 별도의 조사위원회를 대한변협에 두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92조의2). 해당 조사 결과에 따라 대한변협의 징계위원회는 1차 심의결정을 하고(동법 제95조) 법무부의 징계위원회는 대한변협의 징계위원회가 내린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건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96조).

징계 및 심의를 진행하기 위해 변호사법에 따라 법조윤리협의회를 두고(동법 제88조), 법조윤리확립을 위한 법제도, 정책 협의, 실태 조사분석, 윤리위반대책을 수립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한변협의 회칙을 법무부 장관의 인가사항으로 정하고 (동법 제

79조), 모든 변호사에게 그 회칙 준수 의무를 규정하고 (동법 제25조), 그 회칙 위반이 징계사유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91조).

기타 변호사의 결격사유(동법 제5조), 등록거부사유, 사무직원의 결격사유(동법 제22조), 광고의 제한(동법 제23조) 품위유지의무(동법 제24조) 등 공공성 및 윤리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규정이 곳곳에 마련되어 있다.

## 7) 변리사 업무의 공공성 강화 위해 변리사 업무의 기본 성격에 맞는 제도 개선 필요

변리사의 경우 단순한 영리추구를 위한 상인이 아님을 인식하여 변리사 업무의 공공성 강화 방안은 지식재산권 확보가 중요한 경제경영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변리사의 직무활동이 영리추구로 흐르지 않고 변리사법 목적에 부합되도록 변리업무의 활동을 일정 부분 규제할 필요가 발생되며 변리업무가 공공성과 윤리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될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 2. 변리사법의 목적 조항 개정 및 사명 조항 신설

### 1) 공공성 강화 위한 변리사법의 목적 및 변리사의 사명 개정 필요

경제·경영의 글로벌화가 가속화되고 기술의 발달로 인한 정보화의 속도는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더불어 디지털 기술패러다임의 급속한 변화는 인해 변리사 업무영역 확대 필요성 및 명확화 등을 요구해 변리사법의 목적을 새롭게 규정할 필요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것은 현재의 변리사법 목적인 '발명가 권익 보호'에서 한 차원 더

나아가 국가 지식재산의 발전을 위한 변리사 제도 확립을 추구할 필요가 있음을 말한다.

이러한 변리사법의 목적을 새롭게 규정할 필요성은 변리사의 사명을 신설·삽입하여 지식재산 시대에 변리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규정할 필요<sup>6)</sup>가 있음을 의미한다.

## 2) 개선 방안

지식자본 확충 및 축적이 경제성장의 핵심인 지식경제 시대에 변리사가 충분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변리사법의 '목적'을 개정함과 동시에 변리업무의 공공성을 인식하여 변리사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명' 조항을 신설 규정할 필요가 그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변리사법 제1조(목적)에 다만 '변리사 제도를 확립하여 발명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산업재산권 제도 및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여 지식재산권 전체 제도를 명시하지 못하고 있고 공공성 강화 부문에 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아 변리사 사명에 관해 새롭게 한 조를 더 삽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제1조(목적)를 '이 법은 변리사 제도를 확립하여 지식재산권의 창출, 보호 및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제도 및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변리사 '사명' 부분을 새로 명시하기 위해 신설 규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제2조(사명) 변리사는 지식재산권의 전문가로서 이 법에 따라 부여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 공공성에 기초하여 독립적이고 자유롭게 그 직무를 수행한다'라고 적시하여 공공성을 기초로 한 변리사 업무를 명시할 때 비로소 목적과 사명이 함께 적시되어 보완성을 유지할 수 있다.

---

6) 삭제된 변리사법 제1조의2(변리사) ① 변리사는 공업소유권에 관한 권익을 옹호하여 국가산업과 기술의 육성·보호에 기여함을 사명으로 한다.

변호사법에 의하면 ‘제1조(변호사의 사명) ① 변호사는 기본적인 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더불어 ‘②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변리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변호사의 경우는 이미 변호사법에 의해 사회정의 실현, 성실한 직무 수행 및 사회질서 유지 등의 노력을 사명으로 하고 있는 반면에 변리사는 이러한 노력이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수 있음을 인식하여 변리사 사명 부분은 반드시 변리사법에 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변리사의 사명 부분이 변리사법에 규정되어 공공성에 기초한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직무수행이 이루어질 때 지식재산권 제도 및 산업의 발전에 긍정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참고 1] 변리사법의 목적 및 사명 연혁

구 분	내 용
제정법 (‘61.12.23)	<b>제1조(목적)</b> 본 법은 변리사제도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73.2.8)	<b>제1조(목적)</b> 본 법은 변리사제도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b>제1조의2(변리사)</b> ① 변리사는 공업소유권에 관한 권익을 옹호하여 국가산업과 기술의 육성·보호에 기여함을 사명으로 한다. ② 변리사는 그 품위를 유지하고 변리사회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99.2.8)	<b>제1조(목적)</b> 이 법은 변리사로 하여금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게 함으로써 발명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산업재산권제도 및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b>제1조의2(변리사)</b> <삭제>
일부개정 (‘00.1.28)	<b>제1조(목적)</b> 이 법은 변리사 제도를 확립하여 발명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산업재산권 제도 및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참고 2] 타 자격사법 조문 비교

구 분	내 용
변리사	<b>제1조(목적)</b> 이 법은 변리사 제도를 확립하여 발명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산업재산권 제도 및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변호사	<b>제1조(변호사의 사명)</b> ①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한다. ②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법무사	<b>제1조(목적)</b> 이 법은 법무사(법무사) 제도를 확립하여 국민의 법률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 사법제도(사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세사	<b>제1조(목적)</b> 이 법은 관세사 제도를 확립하여 납세자의 편의와 통관 절차의 능률을 증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인노무사	<b>제1조 (목적)</b> 이 법은 공인노무사 제도를 확립하여 노동 관계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꾀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자율적인 노무관리를 도모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인회계사	<b>제1조(목적)</b> 이 법은 공인회계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경영 및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세무사	<b>제1조(목적)</b> 이 법은 세무사제도를 확립하여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b>제1조의2(세무사의 사명)</b>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게 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 3) 타 자격사법과 비교 분석

변호사법에 의하면 제1조에 ‘변호사의 사명’을 분명히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1항에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적시하고 이에 따라 2항에서 변호사가 직무 수행과 노력해야 할 부분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변리사법에서도 공공성 강화를 위해 ‘변리사는 지식재산권의 전문가로서 이 법에 따라 부여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 공공성에 기초하여 독립적이고 자유롭게 그 직무를 수행한다’라고 적시할 경우 변리사의 업무가 공공성을 기초로 함을 확실하게 각 변리사에게 각인시킬 수 있다.

앞으로 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변호사와의 관계 정리를 위해서도 또한 변리업무를 담당하게 될 변호사를 고려해서라도 이미 ‘사명’ 조항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변호사법을 고려해서라도 변리사법에 사명 부분을 삽입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III. 변리사의 공공성 강화 이슈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쟁점

#### 1. 변리사 공공성 강화 위한 세부 이슈 및 세부 연구 방향

##### 1) 변리사 공공성 강화를 위한 세부 이슈

변리사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세부 이슈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 변호사 등 타 자격사와의 협업
- 확대되는 변리사 업무영역
-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변리사 공익활동
- 변리사의 자치권 확대 여부
- 타 자격사와 비교되는 변리사의 권리·의무 사항
- 질적 서비스 강화 위한 변리사 징계 사항
- 실무역량 강화 위한 연수 강화

##### 2) 변리사 공공성 강화를 위한 세부 연구 쟁점

직역 간 협업은 현재 전문자격사간 협업이 부재한 상태로 자격사법상에 동업허용을 불허하는 규정이 존재함에 따라 전문자격사간 협업을 강화하여 부처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업무 영역 면에서 변리사는 출원·심판 대리에 한정되어 있어 다변화되는 지식재산권 시장 변화에 대응이 미흡한 상태에 있다. 변화된 시장상황에 대응하고 변리사의 업무영역 확대를 위해 변리사가 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공익활동 면에서 변리사의 공익적 역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공익활동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연간 일정 시간 이상의 공익활동 종사의무 규정 방안을 분석·제안한다.

변리사들의 자치권 면에서 현재 대한변리사회에서 변리사 등록업무를 위탁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특허청 업무위탁에 불과하여 자체적 운

영 곤란한 점이 있다. 또한 변리사에 대한 징계권이 부재하여 변리사회 징계의 실효성이 없어 자율적 관리가 미흡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변리사 등록업무를 대한변리사회의 고유업무로 규정하여 현재의 위탁 상태에서 발전시키는 방안을 강구한다. 더불어 변리사 징계권 일부를 대한변리사회로 이관하여 자율적 회원관리 방안을 제고하고자 하나 자율적 징계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세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변리사의 권리 및 의무 면에서 현재의 변리사법상 권리와 의무 규정이 미비하여 변리사 위상 확립에 저해되는 면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변리사의 권리와 의무를 변호사 수준으로 강화하고 변리사 윤리의식 고취 방안을 분석·제시한다.

변리사 실무수습·연수제도 등 변리사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를 운영 중이나, 수요자가 원하는 변리사 실무능력 요구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어 단계별 교육과정의 고도화 및 실무 위주 교육을 바탕으로 변리사의 실무역량 및 지식재산 분쟁대응 전문역량을 강화하는 의무연수 강화 방안을 분석·제시한다.

현재의 변리사법상 윤리의무와 징계규정의 미비로 실효적 제재가 미흡한 면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변리사 윤리 규정·징계를 변호사 수준으로 강화하여 변리사 감독 효율성 제고 방안을 분석·제시한다.

## 2. 변리사 공공성 강화 개선 방안 및 쟁점 분석

### 1) 변호사 등 타 자격사와의 협업 강화

#### 가. 현황 및 문제점

글로벌 경제경영환경이 더욱 경쟁적으로 변해감에 따라 지식재산권 환경은 더욱 고도화되고 있으며 이에 종전의 출원 위주의 변리업무가

복합적인 솔루션 제공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변리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변호사 등 타 자격사와의 협업을 강화할 필요가 제기된다.<sup>7)</sup>

## 나. 개선 방향

변호사 등 타 전문자격사와의 협업 강화를 위해 법무부 등 해당 전문자격사 관련 정부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전문자격사간 동업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요구된다.

전문자격사 간 동업 허용을 위해서는 변호사 등 각 전문자격사 제도를 관리하는 부처 간 공감대 형성 및 제도 정비가 필요한데, 동업허용에 대한 각 부처 간 합의가 이루어지려면 변리사법 제7조의2(변리사가 아닌 자 등과의 제휴금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변리사와의 업무 제휴·동업 금지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게 된다<sup>8)</sup>.

## 다. 쟁점 분석

전문자격사 간 동업 허용을 통해 복합적인 법률문제를 다양한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나 변호사와 변리사 사이에 직역 간 갈등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동업 허용을 위한 협의에 난항이 예상되는 점이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 2) 변리사 업무영역 확대

### 가. 현황 및 문제점

경제가 고도화되고 단순조립 제조업에서 벗어나 기술을 중심으로 한 기업성장이 중심이 되고 있어 이에 따른 특허출원 및 특허분쟁의 증가에

7) '12년 변호사법 전부개정을 위한 '변호사제도개선위원회'에서도 전문자격사 동업허용 문제를 연구하였으나, 법 개정안에는 반영되지 못함

8) 변호사법 제34조(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 규정 등도 개정 필요

따라 변리사의 역할에 대한 요구가 기존 출원·심판 대리인에서 기업 지식재산권 전략 수립 전문가로 확대되는 경향이다.

현재 변리서비스 시장상황의 특징은 변리사의 경우 출원·소송대리 등 한정된 시장에서 출혈 경쟁은 심화되고 있으나 다변화되고 고도화되는 지식재산권 시장 변화<sup>9)</sup>에 대한 대응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태이다.

## 나. 개선 방향

변리사법 제2조 개정을 통해 변리사 업무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먼저 지식재산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을 인용하여 변리사가 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규정할 수 있다. 즉, 지식재산기본법 제26조의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을 ‘지식재산 관련 정보의 분석·제공, 지식재산의 평가·거래·관리, 지식재산 경영전략의 수립·자문 등 지식재산에 관련된 서비스산업’으로 정의하여 업무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또한 변리사법 제2조(업무)에서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를 ‘행정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로 변경하여 규정함으로써 업무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변리사의 독점적 업무범위 규정을 위해 변리사법 제21조의 ‘대리업무’에 대한 개정도 필요하여 검토가 요구된다.

## 다. 쟁점 분석

변리사법 개정으로 변리사 업무영역이 확대될 경우 변리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여 지재권 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이 가능하여 매우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변호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법률사무’와 변리사의 업무범위가 충돌할 우려가 있고, 부처 간 업역 다툼이 예상되어 이미 두 전문가자격사 간에 일어나고 있는 갈등을 더욱 악화시킬 위험이 발생

9) 반도체 배치설계, 저작권, 무역·통관, 종자산업법, 부정법 등 지재권 업무범위 확대가 요구된다.

하여 실질적으로 간단하지 않은 문제로 사료된다.

### 3) 변리사 공익활동 의무화

#### 가. 현황 및 문제점

변리사의 공익적 역할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변리사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곤란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변리사들 스스로 공익적 역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재능 나눔도 일부 변리사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실정<sup>10)</sup>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 나. 개선 방향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변리사들 스스로 대한변리사회를 중심으로 공익활동을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아직 인식 부족 및 공감대 부족으로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부득이 변리사의 공익활동의 의무화 규정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변리사 공익활동 의무화 방향은 변호사의 경우를 인용하여 변호사법과 동일하게 변리사에 대해 연간 일정 시간 이상의 공익활동 종사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

변리사가 행할 공익활동의 범위와 시행 방법 등은 대한변리사회가 관리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변리사의 공익활동 의무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특허분쟁 대응 지원 등 공익변리사로 활용되면 변호사·세무사·회계사·관세사·변리사 등으로 재능나눔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sup>11)</sup> 연결된 기업에게 분쟁 전반에 대

10)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에게 연 30시간 이상('00~), 미국 변호사협회는 연 50시간 이상의 공익활동 봉사 요구('93~)

11) 특허료 수입 및 지출의 신고는 세무사 또는 회계사와 협업이 필요하고, 특허침해물품의 세관에서의 통관 제한은 관세사 협업 등이 필요함

한 상담 지원도 가능하게 되어 특히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스타트업 등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 다. 쟁점 분석

변리사의 공익활동을 의무화하게 될 경우 빠르게 진화되는 지식정보 사회에서 변리사의 사회적 역할 실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변리사의 공익활동을 법으로 규정하여 의무화할 경우, 공익활동을 강제함에 따른 변리사들의 반발 또한 예상된다.

### 4) 변리사의 자치권 확대

#### 가. 현황 및 문제점

대한변리사회의 자치권은 변리사 등록업무 수행, 실무수습 등 연수 관리 및 징계권 부여를 통해 행사 가능하다.<sup>12)</sup> 그러나 대한변리사회의 징계가 실질적으로 그 실효성이 없어 자율적인 회원관리에 미흡한 측면 존재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sup>13)</sup>.

#### 나. 개선 방향

변리사 등록업무를 대한변리사회의 고유업무로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 즉, 변리사 등록업무를 위탁이 아닌 변리사회 고유업무로 규정하여 변리사의 자치권을 확대할 방안을 강구함과 동시에 앞서 살펴 본 공익활동 의무화 방안도 대한변리사회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치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변리사의 부정행위 혹은 부당행위에 대해 징계권 일부를 대한변리사회로 이관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를 위해 변리사에 대한 1차 징계권을 변리

12) 변리사 실무수습은 '11.6. 등록업무는 '12.6에 각각 대한변리사회로 위탁

13) 대한변리사회 징계위원회의 징계처분: 경고, 3년 이하의 피선거권 제한, 제명

사회 징계위원회로 이관하고, 특허청은 이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변호사와 유사)<sup>14)</sup> 하자는 의견이 있다.

분쟁 조정 및 중재 기구를 대한변리사회에 설치하자는 의견도 있다. 즉, 변리서비스 수요자와 회원 간 또는 회원 간 분쟁 발생 시 결과에 대한 구속력을 갖는 조정 및 중재기구 설치하자는 의견이 그것이다. 그러나 대한변리사회가 시험을 통과한 변리사들을 중심으로 배타적으로 운용되고 있어 문제점이 쉽게 해결되기보다 변리사 내부에서 출신 그룹에 따라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다. 쟁점 분석

변리사의 자치권 확대 이슈는 변리사들 본인들의 자치권의 핵심인 등록업무와 징계권을 대한변리사회에 이관함으로써 대한변리사회의 자율적 회원관리 유도가 가능한 것이 가장 긍정적인 면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변리사 징계가 온정주의로 흐르는 등 남용될 우려와 함께 변리사가 세 출신그룹(시험출신, 특허청 출신, 변호사)으로 구성되어 있어 변리사의 자치권이 확대되어 대한변리사회를 중심으로 움직일 때 자치권이 비배타적으로 운용될 수 있을지 상당히 우려되는 것이 현실의 문제점이다.

### 5) 변리사의 권리·의무 개선

#### 가. 현황 및 문제점

변리사법상 권리와 의무 규정이 변호사, 법무사 등 타 전문자격사에 비해 미비하여 지식재산권 전문가인 변리사의 위상 확립에 저해 요인<sup>15)</sup>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다.

14) '변리사징계양정규정'을 적용하여 심의하도록 관리할 필요

15) 권리·의무 관련 규정이 변호사법에서는 23개 조항이 있으나 변리사법에서는 불과 7개 조항만 있어 양적으로도 매우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 나. 개선 방향

먼저 ‘비밀보호특권’ 사항으로 변리사의 고객에 대한 비밀보호특권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일반적이다. 다음으로 ‘회칙 준수 의무’ 규정으로 변리사는 대한변리사회 회칙을 준수하는 의무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고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광고 규정’으로 변리사가 자신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광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거짓된 광고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인식된다.

일부 변리사의 경우 과도한 수입으로 인해 과연 양질의 서비스가 가능했는지가 하는 의문이 발생하여 이를 감독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수입관련 사항의 기록 및 보고’ 규정을 신설하여 변리사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장부를 작성하고 사무소에 비치할 것을 의무화하도록 한다. 손해배상책임 및 사무직원 감독책임 등도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다.

이외에 필요한 사항이 많이 있지만 공공성과 관련하여 ‘겸직 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변리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경영자 또는 사용인이 되는 것을 제한하고, 또한 ‘독직행위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변리사가 수입 사건에 대해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을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한다.

## 다. 쟁점 분석

매우 빠르게 글로벌화하고 다변화하는 변리서비스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변리사의 권리와 의무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지식재산권 전문자격사인 변리사의 윤리의식 고취를 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변리사 권리·의무 규정이 강화될 경우 다른

한편으로 변리사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 가능성도 존재해서 이러한 비판을 받아들여 적절한 변리사의 권리 및 의무 규정이 만들어져 변리서비스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6) 변리사 징계 강화

### 가. 현황 및 문제점

변리사법상 윤리 의무와 징계·처벌 규정이 변호사, 법무사 등 타 전문자격사에 비해 약하고 더불어 변리사의 비리 조사를 위한 제도도 미흡한<sup>16)</sup> 것이 상대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 나. 개선 방향

업무영역의 확대와 타 전문자격사와의 협업을 위해 변리사의 윤리 규정을 변호사 수준으로 강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 및 처벌 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변리사 윤리 규정 강화와 징계 및 처벌 강화를 위해 먼저 변리사 사무소 직원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사무소 직원의 위법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한다.

변리사법상 벌칙에 규정된 ‘벌금’을 현실화<sup>17)</sup>할 필요가 있다. 특히 특허법인 및 특허법인(유한)에 대한 벌칙규정을 강화하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변리사에 대한 감독 규정을 신설하여 변리사 징계혐의사실

---

16) 현재·변협 등에서 변리사는 심결취소소송을 대리하는 전문자격사이나, 변호사에 비해 윤리 의무 및 징계가 미약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17) (예) 변리사법 제24조(비변리사의 변리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변호사법 제109조(벌칙)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

등에 대한 조사를 위해 특허청장에게 해당 변리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 등 감독 권한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대한변리사회의 자치권 강화는 지켜가되 변리사의 징계혐의 사실 등에 대해서는 특허청이 주도적으로 감독할 때 변리서비스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쟁점 분석

변리사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사항은 변리사로서는 결코 받아들이기 쉬운 문제는 아니다. 변리사에 대한 벌칙 강화가 지나친 규제라는 반발이 우려되나 국민신문고 혹은 기관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기되는 각종 민원 등을 분석해 보면 변리사에 대한 징계를 강화함으로써 변리사의 위법 행위를 방지하고 변리사 관리·감독의 효율성 제고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 IV. 변리사의 공공성 강화 세부 제도개선 방안

### 1. 변리사 업무영역 명확화

#### 1) 현황 및 문제점

변리사는 출원·소송대리 등 한정된 시장에서 출혈 경쟁을 할 뿐 다변화되고 있는 지재산권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반도체 배치설계, 저작권, 무역·통관, 종자산업법, 부정법 등에서 두드러지며 지재산권 업무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변리사 업무영역을 배타적·비배타적 업무로 구분하여 변리사 고유업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변리사 업무를 나열식으로 규정할 것인지 혹은 포괄식 방식으로 규정할 것인가는 각각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변리사 업무를 나열식으로 규정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입법이 쉽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이와 반면에 포괄식으로 기재할 경우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향후 혼란이 예상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 2) 개선 방안

변리사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다변화되는 지식재산권 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 가능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변리사 업무를 배타적·비배타적 업무로 구분하되, 비배타적 업무는 포괄식과 나열식을 함께 적용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변리사의 배타적 업무에 관해서만 별칙 조항을 규정하는 것이 적합하다.

배타적 업무는 기존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한 산업재산 관련 사항의 대리’ 외에 ‘외국 행정청 등에 대한 산업재산 관련 국내에서 수행되는 업무’를 변리사 고유업무로 규정하고 비배타적 업무는 포괄식과 나열식을 병행하여 규정한다.

외국 행정청 관련 업무는 외국 행정청 관련 업무의 국내 업무를 변리사의 고유업무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 행정청 또는 법원에 대한 특허 등 지식재산 관련 사항에 대한 감정과 자문 등의 업무를 ‘변리사가 할 수 있는 업무’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변리사 업무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 맞추어 ‘반도체배치설계법, 종자산업법, 관세법, 저작권법 등에 따른 대리행위’를 ‘변리사가 할 수 있는 업무’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 3) 기대 효과

변리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다변화되는 지재권 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 가능하며 타 전문자격사와의 협업도 용이해져 변리서비스 시장의 활성화를 이끌고 기업의 특허전략에 효과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 2. 변리사의 공익활동 의무화 방안

### 1) 변리사의 공익활동 개요

#### 가. 공익활동 의무화의 근거

변리사는 직업적 속성상 사업성·상업성이 큰 부분을 차지하나, 지재권 전문자격사로서의 윤리성과 공공성도 상존하여 사업성과 공공성 두 부분이 때로는 상충적인 작용을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변리사는 대한변리사회를 통한 무료변리, 무료상담 등 공익사업 실시

로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복리에 기여하고 있다.

◆ 2006헌마666 결정문(재판관 이강국, 민형기의 합헌 의견 중)

대한변리사회의 법적 지위를 강화함으로써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특허 분쟁 법률구조 등 공익사업의 수행을 보장하는 한편,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간차원의 국제협력을 증진하고자 하는 법 제11조의 입법목적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복리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법 제11조가 등록된 변리사를 변리사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 것은 대한변리사회에의 변리사 가입을 획기적으로 제고함으로써 대한변리사회의 대표성과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 공익사업의 수행과 지적재산권 관련 국제협력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법 제11조가 추구하는 입법목적의 달성에 적합하다 할 것이다.

## 나. 해외 변호사 사례 및 국내 변호사 사례와의 비교

미국의 경우 미국변호사협회(American Bar Association)는 변호사 직업활동에 대한 모범 규정 제6.1조에서 ‘변호사는 매년 적어도 50시간을 공익 법률 활동에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일본 역시 1992년 제2 도쿄변호사회와 오사카변호사회가, 1999년에는 도쿄변호사회와 제1 도쿄변호사회가 변호사 공익활동을 의무로 규정<sup>18)</sup>하고 있다.

한국은 2000년 변호사법 개정을 통해 변호사의 일정 시간 이상 공익활동 종사와 공공단체 등이 지정하는 업무 처리를 의무화<sup>19)</sup>하고 있다.

## 2) 변리사의 공익활동 의무화 조항

### 가. 현황 및 문제점

국내에서 변리사의 직업적 특성을 기능적으로 해석하여 주로 고소득

18) 공익활동 미이행 시 변호사회 회칙 위반으로 징계할 수 있는 규정 신설('01)하였다.

19) 대한변협 회칙에서 변호사의 공익활동 의무 이수시간을 30시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자로 인식하여 사업성 및 상업성을 중점으로 부각하고 있으나 기술정보 사회에서 지재권 전문자격사로서 변리사의 업무진행에 있어서 윤리성과 공공성은 함께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변리사의 공익적 역할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변리사의 공익역할을 확보하기 곤란한 실정이다. 무엇보다 변리사들의 공익적 역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재능 나눔도 일부 변리사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실정<sup>20)</sup>이 이를 말해준다.

먼저 변리사의 공익활동이 공공성 강화를 위한 최전선에 위치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즉, 공익활동을 의무화한다고 해서 곧바로 공공성이 강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변리사가 공공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서 기업이 일상적인 제품 혹은 서비스를 생산함에 있어서 소비자에게 믿을 수 있고 안전함을 바탕으로 한 최고의 가치를 제공할 때 1차적 사회적 책임을 수행한다는 의미에서 공공성을 이행한다고 할 때 변리사의 공익활동이 곧 공공성 강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변리사에게 요구되는 공공성 강화도 일반 기업의 물품 혹은 서비스 생산 시 요구되는 믿을 수 있고 안전성을 바탕으로 한 최고의 가치를 제공하는 제품인가와 같은 맥락에서 인식할 필요가 있겠다. 즉, 변리사가 출원인에게서 의뢰받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의 출원 업무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출원인의 요구사항을 최선의 방법으로 이행하는가에 따라 변리사의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논거라고 할 수 있다.

변리사가 출원인의 요구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할 경우 의뢰한 출

---

20)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에게 연 30시간 이상('00~), 미국 변호사협회는 연 50시간 이상의 공익활동 봉사 요구('93~)

원인은 자신이 노력해온 결과물에 대해 따로 하소연할 수 있는 길이 사실상 막혀 있어 출원인의 요구를 변리사가 제대로 이행하는 의미에서의 변리사의 공공성 강화는 지식재산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최근 들어 변리사의 직무수행에 대해 많은 민원 사항이 국민신문고 혹은 특허청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것을 보면 변리사의 1차적 사회적 책임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최고의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사실에 주목하여 향후 변리사 공익활동도 이러한 전체 위에서 진행해나가야 할 것이다.

더불어 변리사의 공익활동 의무화에 대해서는 변리사법의 목적·사명 규정을 통해 당위성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즉, 대한변리사회 스스로 공익단체라는 위상 정립 및 강화를 위해 변리사의 공익활동 의무화를 확실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 나. 개선내용

앞에서 분석한 논거를 바탕으로 할 때 변리사에 대해 연간 일정 시간 이상의 공익활동 종사 의무 부여와 함께 공익 활동의 방향제시 등을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 변리사에 대해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대한변리사회가 정하는 업무처리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공익활동의 범위와 시행 방법 등은 대한변리사회가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 다. 예상되는 기대효과

변리사의 공익활동을 통해 중소기업의 특허분쟁 대응 지원 등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여 변리사의 사회적 역할이 강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변리사의 공익활동 의무화 시 변리사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

생발명교육, 중소기업 분쟁대응 지원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라. 타 자격사법과 비교 분석

공익활동을 변호사법에 규정한 변호사의 경우 연간 일정시간 이상 공익활동에 종사하여야 됨을 명시하는 의무조항(변호사법 제27조(공익활동 등 지정업무 처리의무) 1항)이 있으며 공익활동의 범위와 그 시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게 하여(3항) 변호사들 스스로 자치권을 갖고 공익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더불어 2항에 변호사는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가 지정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공인노무사의 경우에도 공인노무사법 제24조의 2(공인노무사회에의 가입 및 공익활동) 2항에 ‘공인노무사회는 취약계층의 지원 등 공익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공익활동에 참여함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와의 협업이 중요한 변리사의 경우 변호사법에 의해 변호사에게 요구되는 공익활동의 범위와 그 시행방법 등을 참고하여 공익활동을 반드시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참고 1**

**타 자격사의 공익활동 의무 규정**

구 분	내 용
변호사	<p>제27조(공익활동 등 지정업무 처리의무) ① 변호사는 연간 일정 시간 이상 공익활동에 종사하여야 한다.</p> <p>② 변호사는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가 지정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p> <p>③ 공익활동의 범위와 그 시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p> <p>[전문개정 2008.3.28]</p>
공인노무사	<p>제24조의2 (공인노무사회에의 가입 및 공익활동) ① 개업노무사는 공인노무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p> <p>② 공인노무사회는 취약계층의 지원 등 공익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07.8.3]</p> <p>제26조의2 (취약계층의 지원 등) ① 국가나 공공기관은 사회취약계층을 위하여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노동 관계 법령과 관련한 사건에 대하여 지원하게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국가나 공공기관이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사회취약계층을 지원하게 하려는 경우 그 방법 및 절차, 취약계층의 범위, 공인노무사의 보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인노무사가 제1항에 따라 사회취약계층을 지원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p> <p>&lt;신설 2010.5.25, 2010.6.4&gt;</p> <p>[전문개정 2007.8.3]</p>

## 참고 2

## 변호사의 공익활동 의무 규정

### □ 변호사법

#### 제27조(공익활동 등 지정업무 처리의무)

- ① 변호사는 연간 일정 시간 이상 공익활동에 종사하여야 한다.
- ② 변호사는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소속 지방 변호사회가 지정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 ③ 공익활동의 범위와 그 시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 변호사협회가 정한다.

### □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 제9조의2(공익활동 참가 등)

- ① 개인회원은 연간 일정 시간 이상 공익활동에 종사하여야 한다.
- ② 개인회원은 법령에 의하여 공공기관, 이 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 협회가 지정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③ 공익활동의 범위와 시행방법 등은 규정으로 정한다.

### □ 대한변호사협회 회규 - 공익활동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 회 회칙 제9조의2에 의하여 개인회원의 공익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익활동의 내용] 공익활동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시민의 권리나 자유 또는 공익을 위하거나 경제적인 약자를 돕기 위하여 마련된 자선단체, 종교단체, 사회단체, 시민운동단체 및

교육기관 등 공익적 성격을 가진 단체에 대하여 무료 또는 상당히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과 위 공익적 단체의 임원 또는 상근자로서의 활동 중 이 회 또는 지방변호사회가 공익 활동으로 인정하는 활동

2. 이 회 또는 지방변호사회의 임원 또는 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활동
3. 이 회 또는 지방변호사회가 지정하는 법률상담변호사로서의 활동
4. 이 회 또는 지방변호사회가 지정하는 공익활동 프로그램에서의 활동
5. 국선변호인 또는 국선대리인으로서의 활동
6. 법령 등에 의해 관공서로부터 위촉받은 사항에 관한 활동 (다만, 상당한 보수를 받는 경우를 제외)
7. 개인에 대한 무료변호 등 법률서비스 제공 행위 또는 입법 연구 등 법률지원활동 가운데 공익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서 이 회 또는 지방변호사회가 공익활동으로 인정하는 활동
8. 이 회 또는 지방변호사회가 설립한 공익재단에 대한 기부행위

**제3조[공익활동 등의 실행]** ① 개인회원은 제2조의 공익활동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연간합계 30시간 이상 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지방변호사회는 위 30시간을 20시간까지 하향 조정할 수 있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1항의 공익활동 시간을 완수하지 못한 개인회원은 1시간 당 금 20,000원내지 3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법조경력 2년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회원,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회원과 기타 공익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회원은 제1항의 의무를 면제한다.

**제4조[공익활동 의무대체 등]** ①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이 구성원 및 소속변호사 전원을 위해 아래 각호의 방법으로 행한 공익활동시간은 그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의 구성원인개인회원 및 소속변호사인 개인회원 전원이 공동으로 행한 것으로 보아 이를 그 전원의 수로 균등 배분하여 각 개인회원의 공익활동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이 그 구성원인 개인회원 및 소속변호사인 개인회원 전원을 위해 행한 공익활동
  2.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이 그 구성원인 개인회원 및 소속변호사 전원을 대신하여 공익활동을 행할 변호사를 지정하여 그 변호사가 행한 공익활동
- ② 제1항제2호의 경우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의 공익활동 수행 변호사에 대하여는 그가 행한 공익활동시간 중 그에게 배분이 인정된 시간에 한하여 그 수행변호사 자신의 공익활동시간으로 본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와 기타 조합형 합동법률사무소의 경우에 준용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활동시간의 배분 인정은 그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또는 조합형 합동법률사무소의 대표자가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⑤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또는 조합형 합동법률사무소는 법조경력 2년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개인회원을 공익활동 수행 변호사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공익활동심사위원회의 설치]** 지방변호사회는 소속 개인회원의 공익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한 기구로 공익활동심사위원회를 둔다.

**제6조[기금의 운용]** ① 지방변호사회는 공익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특별기금을 설치 운용한다.

②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돈은 제1항의 특별기금에 입금시킨다.

**제7조[협력의무]** 개인회원을 고용하고 있는 법인회원 또는 개인회원은 고용된 회원이 공익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공익활동 등의 보고]** ① 개인회원은 매년 1월 말까지 그 전년도 공익활동 등의 결과를 소속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변호사회는 매년 2월 말까지 소속회원의 그 전년도 공익활동 등의 결과를 이 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징계]** 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이 규정에 정한 공익활동을 정당한 이유 없이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돈을 납부하지 아니한 개인회원에 대하여 협회장에게 징계개시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위임]** 지방변호사회는 이 규정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규칙 · 규정 또는 세칙을 정한다.

### 3. 변리사의 권리·의무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

#### 1) 현황 및 문제점

##### 가. 변리사의 윤리의식 강화 요구 증대

지식재산이 종래의 실물재산보다 훨씬 중요한 시대를 맞이하여 지재권 전문가로서 변리사의 공익적 역할과 윤리의식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변리서비스 시장의 확대 및 성장에 따른 변리사의 부정행위 및 부당행위증가에 대한 소비자(출원인 등)의 불만사항 등은 변리서비스 시장의 각종 악습에 대한 제재 및 시장 질서유지 기능 강화를 위해 변리사의 윤리의식 강화 필요성 증대시켜왔다.

변리서비스 시장의 악습의 하나로 지적되어 온 ‘변리사가 자신의 비전문분야 수임 후 명세사 등 비변리사에 업무처리를 위탁하는 관행’의 상존으로 변리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변리서비스 소비자들은 이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와 변리사의 윤리의식 강화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져야 할 사항이다.

다른 한편으로 최근 변리사 업무에 대한 부적절한 광고<sup>21)</sup>, 출원인에 불리한 계약서 작성 등 변리사의 부당행위에 대한 민원은 지속적으로 증가<sup>22)</sup>되어온 상황이다.

변리사법상 권리와 윤리의무 규정이 변호사 등 타 전문자격사에 비해 미비하며 또한 징계 및 처벌 규정이 변호사 등 타 전문자격사에 비해 약하고 비리 조사를 위한 제도도 미흡하여 지재권 전문가인 변리사의 위상 확립에 저해될 뿐만 아니라 지재권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쉽게 전가할 수 있어 변리사의 권리·의무를 강화함으로써 변리사의 공공성을

21) 별첨1 변리사 관련 민원 현황(광고 관련 민원) 참조

22) 별첨2 변리사 관련 민원 현황(전체 민원 - 2006년 이후) 참조

확실히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sup>23)</sup>).

타 전문자격사법과 비교해보았을 때 변리사법에서는 비밀유지의무,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의무 등 타 자격사법에 규정된 의뢰인 보호장치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변리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민원 등에 대해 변리사징계위원회 개최를 위한 특허청의 조사권한도 부재하여<sup>24)</sup> 타 전문자격사와 비교해 볼 때 징계 및 조사 등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결코 적지 않은 편이다.

## 나. 대한변리사회의 자율적 회원관리 필요

타 전문자격사회와 비교하여 대한변리사회의 징계권한이 미약하고, 변리사의 수임사건 보고 의무·회칙 준수 의무·겸직 제한 의무 등 의무사항이 변리사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매우 미흡한 상태에 놓여 있어 대한변리사회에서 변리사에 대해 실효적인 회원관리가 되어 있다고 판정하기 매우 어려운 면이 있다.

따라서 변리사의 공익성 및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변리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변리사의 권리·의무규정 개선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변호사 등 타 전문자격사와의 협업이 중요시 되는 상황에서 변리사의 공익성 및 윤리의식 제고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 2) 변리사의 권리·의무 개선 방안

### 가. 회칙 준수 의무

#### ① 개선 필요성

23) 권리·의무 관련 규정이 변호사법에는 23개 조항이 있으나 변리사법에는 불과 7개 조항에 불과하다.

24) 변리사에 대한 역대 징계현황 : 총 47건('74~'11)

변리사회의 강제가입제도 폐지('99.5.9.시행)에 따라 변리사회 회원의 회칙 준수 의무 규정도 함께 폐지되어 변리사회가 회원인 변리사 개개인에 대한 회칙 준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나 2006년 개정안에서 변리사회 의무가입 규정이 재도입('06.6.4.시행)됨에 따라 회칙 준수 의무 규정도 다시 도입할 필요<sup>25)</sup>가 발생되었으나 당시 변리사회 의무가입 규정만 도입하고 이에 따른 회칙 준수 의무 규정은 함께 도입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 ② 개선 내용

변리사의 대한변리사회 회칙 준수 의무화를 규정하여 변리서비스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변리사회 '회원'이 아니라 '변리사'는 변리사회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회원 여부에 관계없이 변리사 전체 권리·의무 조항을 준수하게 할 수 있고 동시에 위반 시 일괄적으로 징계가 가능하다.

타법 사례<sup>26)</sup> 및 회원의 회칙 준수 의무가 순환논법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회원이 아니더라도 회칙 준수 의무를 부과하여야 실제로 변리서비스 시장이 정상 작동할 것으로 기대된다.

## ③ 개선 기대효과

회원 유무에 관계없이 '변리사'는 변리사회의 회칙 준수 의무 규정을 마련할 때 대한변리사회의 위상 및 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으며 동시에 변리사들의 적극적인 변리사회 사업 참여 유도가 가능하다. 이러한 여건이 마련될 때 대한변리사회를 중심으로 공익활동 등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으며 자치권이 강화되어 징계 및 조사 등도 이루어질 수 있

25) 주요국 변리사회 강제가입 현황을 보면 중국·일본·영국·프랑스·독일은 강제가입하게 되어 있고 미국은 복수단체가 존재하며 강제가입 규제는 없다.

26) 변호사법, 법무사법 및 공인회계사법은 회원이 아니라 각 자격사는 각 자격사 단체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을 것으로 기대된다. 즉, 변리업계의 자율적인 내부통제를 통한 공정한 시장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 편익 증대가 예상된다.

[참고] 타 자격사법 조문 비교

구 분	내 용
변호사	<b>제25조(회칙준수의무)</b>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지켜야 한다.
법무사	<b>제30조(회칙 등의 준수 의무)</b> 법무사는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품위를 유지하고 소속 지방법무사회와 대한법무사협회의 회칙을 지켜야 한다.
공인회계사	<b>제16조(회칙준수)</b> 공인회계사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타 자격사법과 비교 분석

변호사 혹은 법무사의 경우는 소속 지방변호사회 및 지방법무사회와 대한변호사회 및 대한법무사협회의 회칙을 따르게 되어 있는 반면 공인회계사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소속에 관계없이 회칙을 따르게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변리사의 경우 공인회계사의 예를 따라 변리사는 회원 여부에 관계없이 대한변리사회의 회칙을 준수하게 하여 변리사의 권리 및 의무조항을 준수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위반 시 일괄적으로 징계 가능하게 하여 수요자의 편익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나. 광고 규정

① 개선 필요성

변리사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거나 오인·혼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광고로 인해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위협하고 소비자 및 변리사에게 예기치 못한 피해를 줄 우려<sup>27)28)</sup>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특허청 기관홈페이지나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민원사항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광고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에게 위해한 광고 등에 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시광고법'에 의해 제재를 받고 있으나 공정위의 표시광고법은 변리사의 특수성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어 변리사법에서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발생한다.

## ② 개선 내용

광고 규정에 관해 개선할 내용은 무엇보다 변리사의 업무에 관해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는 광고를 금지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으로 사료된다. 이를 위해 우선 대한변리사회의 자치권을 인정하여 일정부분 대한변리사회가 정하도록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이 공정한 시장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 특허청이 일일이 시장에 간섭하는 것은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고 사료된다.

따라서 먼저 신문·잡지·방송·컴퓨터 통신 등 광고매체를 열거하지 않고, '광고의 방법, 내용, 매체'를 대한변리사회가 정하도록 하여 자율권을 부여하고, 대한변리사회에 '광고심의위원회'를 두어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사후심의를 하도록 할 경우 자율권 신장과 책임 강화의 이중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해 부당한 기대를 가지게 하는 광고 및 부정한 방법을 제시하는 등 변리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금지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다른 변리사 등을

27) 국민신문고 또는 대한변리사회를 통해 변리사 광고 관련 민원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별첨 1.2 참고)

28) 별첨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식선 상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도의 광고 문안이 온라인에서 난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비방하거나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역시 제재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논의한 내용을 담아 변리사 광고 규정안을 작성하면 아래와 같다.

**\*변리사 광고 규정(안)\***

- ① 변리사·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이하 이 조에서 “변리사등”이라 한다)은 자기 또는 그 구성원의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 실적, 그 밖에 그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광고할 수 있다.
- ② 변리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변리사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2.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누락하는 행위 등 소비자를 오도(誤導)하거나 오해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3.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
  4. 부정한 방법을 제시하는 등 변리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
  5. 그 밖에 광고의 방법·매체 또는 내용이 변리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受任)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제 9조에 따른 대한변리사회가 정하는 광고
- ③ 변리사등의 광고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대한변리사회에 광고심의위원회를 둔다.
- ④ 광고심의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에 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리사회가 정한다.

**③ 개선 기대효과**

현재 특히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변리업무에 대한 각 법인들의 광고문구 등은 소비자(출원인)들을 충분히 현혹시킬만한 문구로 이루어져 시장질서를 매우 어지럽히는 문제를 안고 있다.(별첨 4 참조) 따라서 엄격한 광고규정을 마련하고 우선 이를 대한변리사회를 통해 감독하게 할 경우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 및 변리업계에 대한 신뢰 제고할 수 있음과 동시에 대한변리사회의 자치권 확립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 타 자격사법 조문 비교

구 분	내 용
변호사	<p><b>제23조(광고)</b> ①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이하 이 조에서 "변호사등"이라 한다)은 자기 또는 그 구성원의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 실적, 그 밖에 그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잡지·방송·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다.</p> <p>② 변호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변호사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li> <li>2. 국제변호사를 표방하거나 그 밖에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li> <li>3.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 소비자를 오도(誤導)하거나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li> <li>4.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li> <li>5. 다른 변호사등을 비방하거나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li> <li>6. 부정한 방법을 제시하는 등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li> <li>7. 그 밖에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受任)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광고</li> </ol> <p>③ 변호사등의 광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와 각 지방변호사회에 광고심사위원회를 둔다.</p> <p>④ 광고심사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에 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p> <p><b>제113조(벌칙)</b>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2. 생략</li> <li>3.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하여 광고를 한 자</li> </ol>

④ 타 자격사법과 비교 분석

변호사의 경우 매우 엄격한 광고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변리사의

경우 특히 온라인상을 통해 많은 광고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와 함께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이다. 국민신문고 또는 대한변리사회를 통해 변리사 광고 관련 민원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변리사의 경우도 업무의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고 변호사 및 타 전문자격사와 협업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광고 조항을 확실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 다. 비밀 유지 의무

### ① 개선 필요성

타 전문자격사의 경우 서비스 의뢰인의 신뢰 보호를 위해 각 전문자격사법은 모두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변리사법에는 별칙 조항만 존재<sup>29)</sup>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변리사법에 비밀유지의무 규정을 도입하여 변리사 및 직무상 보조자의 의뢰인 비밀보호 의무를 명확히 할 필요 있다. 여기서 직무상 보조자의 의뢰인 비밀보호 의무를 명확히 할 경우 그 책임에서 면하기 어려워 변리사 입장에서는 해당 의무조항을 준수하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관리감독 책임도 있으므로 직무상 보조자도 비밀유지의무에 넣어야 할 필요 있다.

그러나 비밀 유지 의무 규정이 실현될 경우 형법과 이중으로 규정하고 있고, 형법보다 변리사법에서 더 중한 죄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의견도 존재한다.

위의 상황들을 고려하고 또한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국제특허

---

29) 변리사법 제23조(도용 및 누설의 죄) '변리사이거나 변리사였던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발명자, 고안자, 특허출원자 또는 등록출원자의 발명, 고안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비밀보호특권 필요하여 비밀 유지 의무 규정은 필요하다.

## ② 개선 내용

변리사 및 직무상보조자가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사항에 대해 누설 금지조항이 필요하다. 비밀보호특권은 미국소송에 따른 우리 기업 보호를 위해 선도적으로 도입하되, 현행법과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 ③ 개선 기대효과

변리사 및 직무상보조자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부과를 통해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공정한 시장거래질서 확립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 타 자격사법 조문 비교

구 분	내 용
변호사	<b>제26조(비밀유지의무 등)</b>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무사	<b>제27조(비밀누설 금지)</b> 법무사나 법무사이었던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임인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세사	<b>제14조(비밀엄수 의무)</b> 관세사나 그 직무보조자 또는 관세사나 그 직무보조자였던 사람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p><b>제29조(벌칙)</b>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2. 제14조(제17조의13제1항 및 제1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p>
공인노무사	<p><b>제14조(비밀 엄수)</b> 개업노무사 또는 개업노무사이었던 자(개업노무사 또는 개업노무사이었던 자의 직무보조원 또는 직무보조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p> <p><b>제28조(벌칙)</b>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제14조에 따른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한 자</p>
공인회계사	<p><b>제20조(비밀엄수)</b> 공인회계사와 그 사무직원 또는 공인회계사이었거나 그 사무직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b>제54조(벌칙)</b> ② 공인회계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2. 제20조(제4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0조의16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p> <p><b>제54조(벌칙)</b> ② 공인회계사가 아닌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3. 제20조 또는 제40조의16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무직원 또는 사무직원이었던 자</p>
세무사	<p><b>제11조(비밀 엄수)</b> 세무사와 세무사였던 자 또는 그 사무직원과 사무직원이었던 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p> <p><b>제22조(벌칙)</b>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2. 제11조(제16조의16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9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p>

<b>형법 (친고죄)</b>	<b>제317조(업무상 비밀누설죄)</b> ①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대서업자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차등의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처리 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u>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개정 1997.12.13.]
---------------------	---

#### ④ 타 자격사법 비교 분석

의뢰인의 신뢰 보호를 위해 타 전문자격사법은 모두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변리사법에는 별칙 조항만 존재하는 것은 타 자격사법과 비교할 때 매우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할 수 있다.

별칙 규정과 함께 비밀유지의무 규정을 두어 해당 변리사뿐만 아니라 사무직원(직무상보조원)도 함께 비밀유지의무를 지키도록 하여 의뢰인의 비밀을 확실히 보호할 필요 있다.

비밀유지규정과 함께 별칙조항이 존재해야 변리업무의 공공성을 확실히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라. 수임제한

##### ① 개선 필요성

변리사법 제7조(취급하지 못할 사건)는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개별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히 규정하여 불성실한 대리로 이어질 수 있는 과다수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 ② 개선 내용

변리사 수임제한 규정을 개별 사건별로 구분하여 규정하여 수임제한이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다.

변호사법과 비교해 볼 때 개별사항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여 수요자와의 이해관계가 충돌하지 않도록 해야 하나 아직 그렇지 못해 문제이다. 변호사와의 협업이 중요한 시점으로 이에 대한 대비차원에서 필요하다.

변리사의 윤리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산업재산권 출원 등을 수임 제한에서 예외로 하는 단서규정은 불필요하다.

### ③ 개선 기대효과

변리사 수임 제한 사항을 명확히 할 때 법적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다. 더불어 수임 제한이 이루어질 때 변리사의 서비스에 대한 부실대리 문제가 민원사항으로 특허청에 올라오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된다.

### [참고] 타 자격사법 조문 비교

구 분	내 용
변리사	<b>제7조(취급하지 못할 사건)</b> 변리사는 상대방의 대리인으로서 취급한 사건에 대하여는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다.
변호사	<b>제31조(수임제한)</b> ①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제2호 사건의 경우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위임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상의(相議)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 2.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 3.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법무법인·법무법인

	<p>(유한)·법무조합이 아니면서도 변호사 2명 이상이 사건의 수임·처리나 그 밖의 변호사 업무 수행 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는 하나의 변호사로 본다.</p> <p>③ 법관, 검사, 군법무관(병역의무 이행만을 목적으로 한 군복무는 제외한다), 그 밖의 공무원직에 재직한 변호사(이하 이 조에서 "공직퇴임변호사"라 한다)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등 국가기관(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과 그에 대응하여 설치된 「검찰청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은 각각 동일한 국가기관으로 본다)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다만, 국선변호 등 공익목적의 수임과 사건당사자가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의 수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 제3항의 수임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직퇴임변호사가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이하 이 조에서 "법무법인등"이라 한다)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되는 경우</li> <li>2. 공직퇴임변호사가 다른 변호사, 법무법인등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사건을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등 사실상 수임하는 경우</li> <li>3. 법무법인등의 경우 사건수임계약서, 소송서류 및 변호사의견서 등에는 공직퇴임변호사가 담당변호사로 표시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는 사건의 수임이나 수행에 관여하여 수임료를 받는 경우</li> </ol> <p>⑤ 제3항의 법원 또는 검찰청 등 국가기관의 범위, 공익목적 수임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

#### ④ 타 자격사법 비교 분석

변호사의 경우 변호사법 제31조(수임제한)에 매우 상세하게 수임제한 대상 사건에 대해 적시하고 있다. 이와 반면에 변리사법에서는 제7

조에 ‘취급하지 못할 사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변리사는 상대방의 대리인으로서 취급한 사건에 대하여는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다” 라고만 되어 있어 변호사법과 비교할 때 매우 부정확하고 포괄적으로만 제한하고 있어 많은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면 변호사는 아래 세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고 다만, 제2호 사건의 경우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위임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것은 첫째,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상의(相議)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 둘째,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 셋째,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을 말한다.

변호사법 제31조 제3항에서는 ‘법관, 검사, 군법무관(병역의무 이행만을 목적으로 한 군복무는 제외), 그 밖의 공무원직에 재직한 변호사(이하 이 조에서 "공직퇴임변호사"라 함)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등 국가기관(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과 그에 대응하여 설치된 「검찰청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은 각각 동일한 국가기관으로 본다)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선변호 등 공익목적의 수임과 사건당사자가 「민법」 제 76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의 수임은 허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31조 제4항에서는 앞의 제3항의 수임할 수 없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는데 아래와 같다.

1. 공직퇴임변호사가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이하 이 조에서 "법무법인등"이라 한다)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되는 경우
2. 공직퇴임변호사가 다른 변호사, 법무법인등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사건을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등 사실상 수임하는 경우

3. 법무법인등의 경우 사건수임계약서, 소송서류 및 변호사의견서 등에는 공직퇴임변호사가 담당변호사로 표시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는 사건의 수임이나 수행에 관여하여 수임료를 받는 경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변호사법에서는 매우 구체적으로 변호사가 수임가능한 대상과 가능하지 않은 대상을 적시함으로써 문제의 소지를 확실하게 제거해놓은 반면 변리사법에서는 아직 명확히 구분해놓지 않아 변리사가 수임 가능한 대상과 가능하지 않은 대상을 구분해서 수임 유무로 인해 변리사가 문제를 유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수임 대상에 대한 제한을 논했다면 변리서비스에 대한 부실대리 논란과 민원이 많아 이에 대한 대책으로 수임건수를 제한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가 있어야 부실대리의 문제를 직간접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부실대리에 대한 민원 사항을 보면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실대리에 대해 많은 불만사항들이 정부에 접수되고 있는 소식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 마. 수임관련 사항의 기록 및 보고

### ① 개선 필요성

변리사에 대한 수임관련 사항 기록 의무가 없어 세금 탈루 등 변리사의 불법행위 발생이 우려된다<sup>30)</sup>.

탈세 우려뿐만 아니라 과도한 수임건수로 인해 변리업무의 질이 확

---

30) 2007헌마667사건에서는 변호사법의 '수임사건 건수 및 수임액의 지방변호사회 보고' 규정은 사건 수임 관련 정보를 한층 더 투명하게 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다는 결정을 선고('09.10.29)

보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부실대리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임관련 사항의 기록 및 보고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 ② 개선 내용

변리사가 그 직무에 관련하여 장부를 작성·보관하고 연도별 수임사건 수·수임액을 대한변리사회에 보고할 것을 의무화 한다. 이것은 대한변리사회가 법정단체로서 강제가임을 전제로 하므로 감독을 위해 수임에 관한 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제출 정보는 최소한에 그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변리사회에 총 건수 및 총액을 보고하는 것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임에 관한 장부 작성·보관 및 수임사건·수임액 보고 의무를 해태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도 함께 규정하여야 수임관련 사항에 대한 기록 및 보고가 실효성을 가진다.

수임 건수가 적정수준을 넘어서 변리업무의 질이 부실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부득이 특허청이 직접적으로 변리업무에 대한 감사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규정들은 과도한 수임으로 인해 부실대리 혹은 불성실 대리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에 그 의의가 있음을 고려하여 이러한 문제가 변리사회 스스로 자정 능력을 갖게 된다면 규정 자체는 폐지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일정기간 과도한 수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제한하는 규정은 일정기간 존재하는 규제로 일몰규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임관련 사항을 기록·보관하게 될 경우 과도한 수임을 막을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지만 현재 과도한 수임을 하는 배경에는 개인변리사의 경우 대표변리사의 이름만 기재하여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

된다. 특허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평균 1년에 1만 건 가까이 출원대리(특허, 실용, 디자인, 상표)를 한 변리사도 있고 10년간 1만건 이상 출원대리 한 변리사만 50여명에 이르러 1년에 평균 1천 건 이상 변리업무를 수행했다는 것인데 이는 변리사 1인이 하기는 어려운 업무량이며 1인이 했다면 부실대리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부실대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참여한 변리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출원업무를 대리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명기하는 것이 책임소재를 확실히 함과 동시에 부실대리를 막을 수 있는 방안으로 사료된다.

### ③ 개선 기대효과

수입관련 사항을 기록하고 변리사회 혹은 특허청에 보고할 경우, 변리사의 공정하고 성실한 업무수행 확보를 기대할 수 있고, 세금 탈루 등 변리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수입관련 사항을 기록·보고할 경우 정확한 수입기록이 남아 혹시 부실대리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여 변리업무의 질을 일정 수준 이상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변리서비스 수요자의 기대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참고] 타 자격사법 조문 비교

구 분	내 용
변호사	<p><b>제28조(장부의 작성·보관)</b> ① 변호사는 수입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장부에는 수입받은 순서에 따라 수입일, 수입액, 위임인 등의 인적사항, 수입한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장부의 보관 방법, 보존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b>제28조의2(수입사건의 건수 및 수입액의 보고)</b> 변호사는 매년</p>

	<p>1월 말까지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사건의 건수와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b>제117조(과태료)</b>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21조의2제5항(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위탁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개선 또는 시정 명령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li> <li>제22조제2항제1호, 제28조의2, 제29조, 제35조 또는 제36조(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li> <li>제28조에 따른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보관하지 아니한 자</li> </ol>
<p>법무사</p>	<p><b>제22조(사건부 및 기명날인)</b> ① 법무사는 사건부(사건부)를 갖추어 두고, 사건을 위임받으면 사건부에 위임받은 순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련번호</li> <li>위임받은 연월일</li> <li>사건 명(명)</li> <li>보수액</li> <li>위임인의 주소와 성명</li> <li>그 밖에 필요한 사항</li> </ol> <p>② 법무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위임받아 작성한 서류의 끝부분이나 기재란(기재란) 밖에 기명날인(기명날인)하여야 한다.</p>
<p>관세사</p>	<p><b>제10조의2(기명날인 등)</b> 관세사는 그 직무에 관하여 신고서, 신청서, 청구서, 보고서 또는 그 밖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관계 기관에 제출할 때에는 해당 서류에 기명날인(記名捺印)하거나 서명(전자문서인 경우에는 전자서명을 말한다)하여야 한다.</p> <p><b>제11조(장부의 작성 및 보관)</b> 관세사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p> <p><b>제31조(과태료)</b>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11조(제17조의13제1항 및 제1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li> </ol>

공인노무사	<p><b>제17조 (장부의 비치 등)</b> ① 개업노무사는 그 사무소에 직무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그 장부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장부는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관리 및 보존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갖추어 두어야 할 장부의 종류·양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p> <p><b>제30조 (과태료)</b>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3. 제17조제1항(제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직무에 관한 장부의 작성·관리·보존의무를 위반한 자</p> <p>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p>
공인회계사	<p><b>제18조(장부의 비치)</b> 공인회계사는 그 직무에 관하여 장부를 작성하고 이를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p> <p><b>제53조(벌칙)</b> ⑥ 공인회계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2. 제18조(제4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사무소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p>

#### ④ 타 자격사법 비교 분석

변호사법 제28조(장부의 작성·보관)에 따르면 ‘변호사는 수임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하며 이 장부에는 수임받은 순서에 따라 수임일, 수임액, 위임인 등의 인적사항, 수임한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내용 등을 기재’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동시에 ‘변호사는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사건의 건수와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해야 할 의무도 있다. 또한 위의 사항을 어길 시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매우 엄격한 규정을 가하고 있다.

관세사의 경우도 장부를 작성, 보관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법무사의 경우도 사건을 위임 받으면 사건 명 및 보수액 등 여러 사항을 작성하여야 하며 공인노무사 역시 직무에 관한 장부를 작성 비치하게 되어 있다. 이를 어길 경우 공인노무사는 과태료를 지불해야 한다. 공인회계사도 직무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고 비치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역시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

변호사의 경우를 준용할 때, 변리사의 수임관련 사항을 기록 및 보관하는 것이 변리서비스 시장의 신뢰형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의무사항으로 판단되어 반드시 변리사법에 포함되어야 할 의무사항이다.

## 바. 겸직 제한

### ① 개선 필요성

변리사에 대한 겸직제한 규정 부재로 인해 겸직을 하고 있는 변리사와 의뢰인 간 이익 충돌 우려된다.

### ② 개선 내용

변리사가 보수를 받는 공무원 또는 영리 목적의 업무에 대한 경영자나 사용인이 되는 것을 금지한다. 다만, 휴업하거나 대한변리사회의 허가가 있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다.<sup>31)</sup>

### ③ 개선 기대효과

변리사의 영리업무 겸직을 제한하여 변리서비스 품질을 제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31) 겸직제한 의무 위반에 따른 벌칙 규정을 둘 것인지 여부 검토 필요

[참고] 타 자격사법 조문 비교

구 분	내 용
변호사	<p><b>제38조(겸직 제한)</b> ① 변호사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이거나 지방의회 의원 또는 상시 근무가 필요 없는 공무원이 되거나 공공기관에서 위촉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되거나 소속 변호사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상업이나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경영하거나 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는 것</li> <li>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이사 또는 사용인이 되는 것</li> </ol> <p>③ 변호사가 휴업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관세사	<p><b>제15조(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업무 종사 금지)</b> ① 관세사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이거나 지방의회의원 또는 상시 근무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이 되거나 공공기관에서 위촉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관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외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 상근(常勤) 임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학교, 학원 등 교육 분야 출강(전임인 경우는 제외한다)</li> <li>2. 보세화물의 보관업, 하역업, 운송업, 운송주선업 등 통관과 관련한 업무</li> </ol> <p>③ 관세사가 휴업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b>제29조(벌칙)</b>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3. 제15조를 위반한 자
세무사	<p><b>제16조(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 업무 종사의 금지)</b> ① 세무사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회의원이거나 지방의회의원이 되는 경우</li> <li>2. 상시 근무를 할 필요가 없는 공무원이 되는 경우</li> <li>3.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서 위촉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li> </ol> <p>② 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외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임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학교·학원 등 교육 분야 출강(전임인 경우는 제외한다)</li> <li>2. 영리법인의 비상근 임원</li> </ol> <p>③ 세무사가 휴업하면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b>제23조(벌칙)</b>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u>200만원 이하의 벌금</u>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3. 제16조를 위반하여 공무원을 겸하거나 영리 업무에 종사한 자</li> </ol>

#### ④ 타 자격사법 비교 분석

변호사법 제38조에 변호사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게 하고 있으며 영리행위를 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다. 관세사도 관세사법 제15조에 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업무 종사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세무사 역시 세무사법 제16조에 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 업무 종사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변리사도 변호사, 관세사, 세무사와 같이 겸직을 제한하고 영리업무 종사를 금지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사. 품위 유지 규정

### ① 개선 필요성

변리사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수임행위나 직무수행행위와 관련한 변리사의 품위 유지 의무를 강화할 필요 있다.

### ② 개선 내용

변리사법 제8조의2(품위유지 및 성실·공정의무)에 직무 수행 시 진실은폐 또는 거짓 진술 금지 의무를 부가한다.

### ③ 개선 기대효과

변리사의 직무 수행행위에 대한 품위 유지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변리사의 윤리의식 고취하여 공공성 강화가 기대된다.

## [참고] 타 자격사법 조문 비교

구 분	내 용
변호사	<b>제24조(품위유지의무 등)</b> ① 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변호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무사	<b>제30조(회칙 등의 준수 의무)</b> 법무사는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품위를 유지하고 소속 지방법무사회와 대한법무사협회의 회칙을 지켜야 한다.
관세사	<b>제13조(성실 의무)</b> 관세사는 이 법과 「관세법」 및 이 법과 「관세법」에 따른 명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통관업을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공인노무사	<p><b>제12조 (품위유지와 성실의무 등)</b> ① 개업노무사는 항상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조에서 정한 직무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p>
공인회계사	<p><b>제15조(공정·성실의무등)</b> ①공인회계사는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행하여야 하며, 그 직무를 행할 때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p> <p>②공인회계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공인회계사는 직무를 행할 때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허위보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p><b>제53조(벌칙)</b> ①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의 이사, 소속공인회계사 및 외국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u>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u>에 처한다.</p> <p>1. 제15조제3항(제40조의18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p>
세무사	<p><b>제12조(성실의무)</b> ① 세무사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p> <p>② 세무사는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을 하지 못한다.</p>

#### ④ 타 자격사법 비교 분석

변호사법 제24조(품위유지의무 등)에 따르면 ‘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고, 직무 수행 시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을 금지하고 있다.

공인노무사도 품위유지와 성실의무 조항이 있으며, 공인회계사의 경

우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행할 것을 의무화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매우 강한 벌칙 조항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세무사 역시 품위유지와 거짓진술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타 전문자격사들의 경우 품위유지와 성실의무를 의무조항으로 있어 타 전문자격사와 협업을 확대하고 있는 변리사의 경우도 현재의 품위유지 및 성실·공정의무에 더하여 직무 수행 시 진실 은폐 또는 거짓 진술 금지 의무를 부가하여 변호사의 품위유지 의무와 그 수준을 동일하게 한다.

#### 아. 업무의 위촉(지정업무 처리 의무)

##### ① 개선 필요성

변리사법 제2조의 업무범위에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감정(鑑定)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 법원 및 행정청에서 변리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자문 요청하는 경우 대한변리사회에 업무 위촉 또는 자문을 위한 근거가 필요하다.

##### ② 개선 내용

행정청 또는 법원 등에서 변리사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대한변리사회에 업무를 위촉하거나 자문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한다.

대한변리사회가 행정청 또는 법원 등의 위촉 또는 자문 요청에 대해 해당 업무를 회원에게 하도록 할 수 있는 권리규정을 마련한다.

##### ③ 개선 기대효과

법원 등의 업무 위촉 또는 자문에 따른 대한변리사회의 역할을 명확히

함으로써 대한변리사회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다.

### [참고] 타 자격사법 조문 비교

구 분	내 용
변호사	<p><b>제27조(공익활동 등 지정업무 처리의무)</b> ① 변호사는 연간 일정 시간 이상 공익활동에 종사하여야 한다.</p> <p>② 변호사는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가 지정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p> <p>③ 공익활동의 범위와 그 시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p>
공인회계사	<p><b>제44조(업무의 위촉등)</b> ① 공공기관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공인회계사회에 업무를 위촉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p> <p>② 공인회계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자문의 요청을 받은 경우 그 업무를 회원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p> <p>③ 공인회계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자문을 요청한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을 건의할 수 있다.</p>
세무사	<p><b>제18조의3(업무의 위촉 등)</b> ① 공공기관은 제2조에 따른 세무사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세무사회에 업무를 위촉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p> <p>② 세무사회는 제1항에 따라 위촉 또는 자문을 받은 경우 그 업무를 회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p>

### ④ 타 자격사법 비교 분석

변호사법 제27조(공익활동 등 지정업무 처리의무) 2항에 따르면 ‘변호사는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가 지정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이들 기관이 지정한 업무를

처리할 의무를 갖는다.

또한 공인회계사법 제44조(업무의 위촉등)에 ‘공공기관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공인회계사회에 업무를 위촉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고 하고 ‘공인회계사회는 위촉 또는 자문의 요청을 받은 경우 그 업무를 회원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세무사법 제18조의3(업무의 위촉 등)에도 ‘공공기관은 세무사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세무사회에 업무를 위촉하거나 자문할 수 있으며 세무사회는 위촉 또는 자문을 받은 경우 그 업무를 회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히 변호사회, 공인회계사회, 세무사회에 업무를 지정, 위촉할 경우 수행할 의무를 갖게 됨을 볼 때 변리사도 대한변리사회가 행정청 또는 법원 등의 위촉 또는 자문 요청에 대해 해당 업무를 회원에게 하도록 할 수 있는 권리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자. 변리사에 대한 감독

### ① 개선 필요성

변리사에 대한 특허청장의 감독 권한 부재로 인해 변리사의 업무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이 우려된다.

### ② 개선 내용

변리사에 대한 대한변리사회 및 특허청장의 감독 권한을 명문화한다.

특허청장에게 변리사의 변리사법 또는 명령 위반을 확인하기 위한

업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 권한을 부여한다.

③ 개선 기대효과

변리사의 법령 위반으로 인한 법률소비자(출원인)의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고 변리사 징계 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 필요한 규정이다.

[참고] 타 자격사법 조문 비교

구 분	내 용
변호사	<b>제39조(감독)</b>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 대한변호사협회 및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법무사	<b>제32조(감독)</b> ① 법무사는 소속 지방법무사회, 대한법무사협회 및 그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의 감독을 받는다. ② 지방법원장은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무사의 회계에 관한 장부 및 사건부와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검열하게 할 수 있다. ③ 지방법원장은 제2항에 따른 감독에 관한 사무를 지방법원지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공인노무사	<b>제18조 (감독상의 명령 등)</b>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개업노무사 또는 노무법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개업노무사 또는 노무법인에게 이를 행하기 7일 전까지 일시,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알릴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③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p>④ 노동부장관은 제24조에 따른 공인노무사회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업무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인노무사회는 그 결과를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	--

#### ④ 타 자격사법 비교 분석

변호사법 제39조(감독)에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 대한변호사협회 및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라고 명기하고 있어 감독의 주체와 대상이 명확히 밝히고 있다.

법무사법 제32조(감독)에서도 ‘법무사는 소속 지방법무사회, 대한법무사협회 및 그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의 감독을 받는다’라고 명기하고 또한 ‘지방법원장은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무사의 회계에 관한 장부 및 사건부와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검열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감독과 더불어 장부 등을 검열할 수 있는 권리를 감독기관에서 갖고 있다는 점에서 감독 권한 부재로 변리사의 업무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이 우려되는 변리사의 경우와 매우 다름을 알 수 있다.

공인노무사도 공인노무사법 제18조 (감독상의 명령 등)에 ‘고용노동부장관은 개업노무사 또는 노무법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감독기능을 정부가 확실하게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타 전문자격사의 경우 주무부처가 해당 법에

의해 감독기능을 확실히 갖고 있는데 비해 변리사의 경우에는 변리사의 업무행위에 대한 관리 및 감독 기능이 확실히 확보되지 않아 변리서비스가 부실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히 요구된다.

## 차. 사무직원의 자격

### ① 개선 필요성

변리사 사무소의 사무직원에 대한 소극적 요건 미비로 인해 사무직원에게 의한 출원인의 불측의 손해 발생이 우려된다.

### ② 개선 내용

변리사 사무소의 사무직원에 대한 요건을 규정함에 있어 사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는 자에 대해 규정한다. 또한 사무직원을 단순히 지도·감독할 책임을 넘어 연수 등 역량강화에 힘쓸 것을 규정한다.

### ③ 개선 기대효과

사무직원에 대한 소극적 요건을 규정하여 변리서비스 수요자의 이익을 도모하고 변리사에 대한 감독 책임을 강화할 수 있다.

## [참고] 타 자격사법 조문 비교

구 분	내 용
변리사	<b>제8조의4(사무직원)</b> 변리사는 사무직원을 둘 수 있으며, 사무직원을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다.
변호사	<b>제22조(사무직원)</b> ① 변호사는 법률사무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p>②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1항에 따른 사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p> <p>1. 이 법 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또는 제3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p> <p>가.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p> <p>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p> <p>다.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p> <p>2.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p> <p>3.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p> <p>③ 사무직원의 신고, 연수(研修),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p> <p>④ 지방변호사회의 장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소속 변호사의 사무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제2항에 따른 전과(前科) 사실의 유무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p> <p>⑤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전과 사실의 유무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 회신할 수 있다.</p>
<p>법무사</p>	<p><b>제23조(사무원)</b> ① 법무사는 사무원(사무원)을 둘 수 있다.</p> <p>② 법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1항에 따른 사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p> <p>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p> <p>2. 이 법 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3조,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p> <p>가.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p>

	<p>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p> <p>다.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p> <p>3.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p> <p>4. 다른 법무사사무소의 사무직원인 자</p> <p>5. 행정사업을 하기 위하여 「행정사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p> <p>6.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을 등록한 자</p> <p>③ 법무사는 그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무원을 지도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다.</p> <p>④ 제1항에 따른 사무원의 수(수)와 채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p> <p>⑤ 법무사는 제1항에 따른 사무원이 아닌 자에게 사무를 보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⑥ 지방법무사회의 장은 소속 법무사의 사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제2항의 전과(전과) 사실이 있는지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p> <p>⑦ 제6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은 전과사실이 있는지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p>
공인회계사	<p><b>제13조(사무직원)</b> ① 공인회계사는 그 직무의 적정한 수행을 보조하기 위한 사무직원(이하 "사무직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p> <p>② 공인회계사는 사무직원을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다.</p>
세무사	<p><b>제12조의4(사무직원)</b> ① 세무사는 직무의 적정한 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p> <p>② 세무사는 직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무직원을 지도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다.</p> <p>③ 사무직원의 자격·인원·연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p>

#### ④ 타 자격사법 비교 분석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등 타 전문자격사의 경우 사무직원에 관한 규정이 각 전문자격사법에 존재하나 변리사의 경우와 달리 상대적으로 사무직원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변호사법 제22조(사무직원)에 ‘변호사는 법률사무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 항에 사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는 자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항목을 나열하고 있다. 또한 사무직원의 신고, 연수(研修),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도록 하고 있어 사무직원의 역량강화 건도 변호사법에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법무사의 경우에도 변호사의 경우와 다를 바 없이 사무직원을 둘 수 있으며 동시에 채용할 수 없는 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항목을 적시하고 있다.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의 경우도 해당 법에 따라 사무직원을 둘 수 있고 또한 각 전문자격사가 사무직원을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카.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 ① 개선 필요성

변리사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보장할 필요<sup>32)</sup> 있다.

---

32) '12년 말 현재, 개인변리사 71명, 특허사무소 29개(146명), 특허법인 22개가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 최근 10년간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변리사 중 업무상 과실로 인한 사고 건수는 9건(총 배상액 4억9천8백만원)이다.

수요자 입장에서 변리사의 직무상 위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 배상 책임을 변리사에게 보장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이로운 일이다.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의미에서 규정이 필요하다.

## ② 개선 내용

변리사(특허법인 등에 소속된 변리사 제외)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보험 가입 등을 의무화한다.

변호사들은 변리 업무를 잘 하지 않는데 회비에 손해배상 보험까지 들어야 한다면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변호사가 변리업무를 하지 않음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변리업무를 한 건이라도 수임하거나 할 가능성이 있다면 변리서비스 수요자를 위해 당연히 손해보험을 가입해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 ③ 개선 기대효과

변리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등을 의무화함으로써 의뢰인의 예기치 못한 피해를 방지하고 신뢰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참고] 타 자격사법 조문 비교

구 분	내 용
법무사	<b>제26조(손해배상 책임)</b> ① 법무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무사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보증보험이나 제 67조에 따른 공제(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관세사	<b>제16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b> 관세사(제17조의 관세법인 또

	<p>는 제19조제4항의 통관취급법인등에 소속된 관세사는 제외한다)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공인노무사	<p><b>제12조의4 (손해배상책임의 보장)</b> 개업노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p> <p><b>제30조 (과태료)</b>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2의2. 제12조의4(제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p>
공인회계사	<p><b>제19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b> 공인회계사(회계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를 제외한다)는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촉인(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를 포함한다)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 위촉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보장되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회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하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또는 보험가입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세무사	<p><b>제16조의2(손해배상책임의 보장)</b> 세무사(세무법인에 소속된 세무사는 제외한다)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 ④ 타 자격사법 비교 분석

의뢰인에 대해 각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자격사는 법무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모두 손해배상 책임을 각 전문자격

사범에 포함하고 있다. 특히 공인노무사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고자 한다.

변리사의 경우에도 공인노무사나 세무사와 같이 출원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다.

## 타. 변리사 징계권 일부의 대한변리사회 이관

### ① 개선 필요성

대한변리사회는 변리사로 구성된 법정단체이나, 대한변리사회 징계의 실효성이 없어 회원관리가 곤란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 ② 개선 내용

변리사에 대한 1차 징계권을 변리사회 징계위원회로 이관하고, 특허청은 이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하는 안을 고려한다.

### ③ 개선 기대효과

자치권의 핵심인 징계권 일부를 대한변리사회에 이관함으로써 대한변리사회의 자율적 회원관리를 유도한다.

## [참고] 타 자격사범 조문 비교

구 분	내 용
변리사	<b>제16조(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b>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특허청에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

	<p>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변리사시험의 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li> <li>2. 변리사시험 선발인원의 결정</li> <li>3. 변리사시험의 일부 면제 대상자의 요건</li> <li>4. 변리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li> <li>5. 그 밖에 변리사의 자격 취득 및 징계와 관련된 중요 사항</li> </ol> <p>②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특허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허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특허청 소속 공무원</li> <li>2. 변리사</li> <li>3. 대학교수</li> <li>4. 산업재산권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li> </ol> <p>④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의 의결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7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징계: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li> <li>2. 제17조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징계: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li> <li>3.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사항: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li> </ol>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변호사	<p><b>제92조(변호사징계위원회의 설치)</b> ① 변호사의 징계는 변호사징계위원회가 한다.</p> <p>②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에 각각 변호사징계위원회를 둔다.</p> <p><b>제92조의2(조사위원회의 설치)</b> ① 변호사의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조사위원회를 둔다.</p> <p>② 조사위원회는 필요하면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당사자나 관계인을 면담하여 사실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③ 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제93조(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이하 "변협징계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 2명
2.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2명
3. 대한변호사협회 총회에서 선출하는 변호사 3명
4.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변호사가 아닌 법학 교수 및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각 1명

② 변협징계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두며,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제1항의 위원을 추천하거나 선출할 때에는 위원의 수와 같은 수의 예비위원을 함께 추천하거나 선출하여야 한다.

④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원장이나 판사·검사·변호사인 위원 또는 예비위원이 될 수 없다.

⑤ 위원과 예비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⑥ 변협징계위원회의 위원 및 예비위원은 제94조에 따른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위원 및 예비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94조(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이하 "법무부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위원 8명으로 구성하며, 예비위원 8명을 둔다.

②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되고, 위원과 예비위원은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 중에서 각 2명, 검사 중에서 각 2명,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중에서 각 1명과 변호사가 아닌 자로서 법학 교수 또는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각 3명을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의 경우 검사 2명 중 1명은 법무부차관으로 할 수 있다.

③ 위원과 예비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법무부징계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5조(변협징계위원회의 심의권)** ① 변협징계위원회는 제91

조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징계 사건을 심의한다.

② 변협징계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조사위원회에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96조(법무부징계위원회의 심의권)** 법무부징계위원회는 변협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한다.

**제97조(징계개시의 청구)**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변호사가 제91조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하면 변협징계위원회에 징계개시를 청구하여야 한다.

**제97조의2(징계개시의 신청)** ① 지방검찰청검사장은 범죄수사 등 검찰 업무의 수행 중 변호사에게 제91조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그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지방변호사회의 장이 소속 변호사에게 제91조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97조의3(징계개시의 청원 및 재청원)** ① 의뢰인이나 의뢰인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수입변호사나 법무법인[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과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을 포함한다]의 담당변호사에게 제91조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으면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장에게 그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의 신청을 청원할 수 있다.

② 지방변호사회의 장은 제1항의 청원을 받으면 지체 없이 징계개시의 신청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의 요지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청원인은 지방변호사회의 장이 제1항의 청원을 기각하거나 청원이 접수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징계개시의 신청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면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재청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청원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청원이 접수되어 3개월이 지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97조의4(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의 결정)** ①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제89조의4제4항(제89조의5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7조의2에 따른 징계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제97조의3제3항에 따른 재청원이 있으면 지체 없이 징계개시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징계개시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조사위원회로 하여금 징계혐의사실에 대하여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③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제1항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징계개시 신청인(징계개시를 신청한 윤리협의회 위원장이나 지방검찰청검사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재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7조의5(이의신청)** ① 징계개시 신청인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징계개시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징계개시의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징계개시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면 변협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제97조의4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징계개시의 신청이 접수되어 3개월이 지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변협징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징계절차를 개시하여야 하며,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③ 변협징계위원회는 제2항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와 이유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8조(징계 결정 기간 등)** ① 변협징계위원회는 징계개시의 청구를 받거나 제97조의5제2항에 따라 징계 절차를 개시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징계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결로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법무부징계위원회는 변협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징계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의결로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징계개시의 청구를 받거나 징계 절차가 개시되면 위원장은 지체 없이 징계심의 기일을 정하여 징계혐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8조의2(징계혐의자의 출석·진술권 등)** ① 변협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심의의 기일을 정하고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을 명할 수 있다.

② 징계혐의자는 징계심의기일에 출석하여 구술 또는 서면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거를 제

출할 수 있다.

③ 변협징계위원회는 징계심의기일에 심의를 개시하고 징계 혐의자에 대하여 징계 청구에 대한 사실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심문할 수 있다.

④ 징계혐의자는 변호사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특별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사건에 대한 보충 진술과 증거 제출을 하게 할 수 있다.

⑤ 변협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위원장의 출석명령을 받고 징계심의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⑥ 변협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출석한 징계혐의자나 선임된 특별변호인에게 최종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⑦ 징계개시 신청인은 징계사건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98조의3(제척 사유)** 위원장과 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자에 대한 징계 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98조의4(징계 의결 등)** ① 변협징계위원회는 사건 심의를 마치면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② 변협징계위원회는 징계의 의결 결과를 징계혐의자와 징계청구자 또는 징계개시 신청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징계혐의자가 징계 결정의 통지를 받은 후 제100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이의신청 기간이 끝난 날부터 변협징계위원회의 징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제98조의5(징계의 집행)** ① 징계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집행한다.

② 제90조제4호의 과태료 결정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이 있으며, 검사의 지휘로 집행한다.

③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징계처분을 하면 이를 지체 없이 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게재하는 등 공개하여야 한다.

④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변호사를 선임하려는 자가 해당 변호사의 징계처분 사실을 알기 위하여 징계정보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징계처분의 공개 범위와 시행 방법, 제4항에 따른 변호

	<p>사를 선임하려는 자의 해당 여부, 열람·등사의 방법 및 절차, 이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b>제98조의6(징계 청구의 시효)</b> 징계의 청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p> <p><b>제99조(보고)</b>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변협징계위원회에서 징계에 관한 결정을 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b>제100조(징계 결정에 대한 불복)</b> ① 변협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징계혐의자 및 징계개시 신청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p> <p>② 법무부징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변협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을 취소하고 스스로 징계 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기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심의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98조의2를 준용한다.</p> <p>③ 제2항의 결정은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④ 법무부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징계혐의자는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p> <p>⑤ 제4항의 경우 징계 결정이 있었던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⑥ 제4항에 따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p> <p><b>제101조(위임)</b> ①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운영이나 그 밖에 징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② 변협징계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p> <p><b>제101조의2(「형사소송법」 등의 준용)</b> 서류의 송달, 기일의 지정이나 변경 및 증인·감정인의 선서와 급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p>
법무사	<p><b>제48조(징계처분)</b> ① 지방법원장은 법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49조에 따른 법무사징계위원회에</p>

	<p>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법원규칙을 위반한 경우</li> <li>2. 소속 지방법무사회 회칙이나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을 위반한 경우</li> <li>3. 사무원에 대한 직무상의 감독을 소홀히 한 경우</li> <li>4.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개월 이상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경우</li> <li>5. 직무의 해당 여부와 상관없이 법무사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li> </ol> <p>②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명(제명)</li> <li>2.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업무정지</li> <li>3.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li> <li>4. 견책(견책)</li> </ol> <p>③ 제2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결정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채무명의)와 같은 효력이 있으며, 검사의 지휘로 집행한다.</p> <p><b>제49조(법무사 징계위원회)</b> ① 법무사에 대한 징계의결을 하기 위하여 지방법원에 법무사 징계위원회를 둔다.</p> <p>② 법무사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p> <p><b>제50조(징계사유의 시효)</b>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p>
관세사	<p><b>제27조(징계)</b> ① 관세청장은 관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8조에 따른 관세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이 법 또는 「관세법」을 위반하거나 이 법과 「관세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li> <li>2. 관세사회의 회장이 관세사회 회칙을 위반한 관세사의 징계를 건의한 경우</li> </ol> <p>② 징계는 다음 각 호의 네 종류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등록취소</li> <li>2. 1년 이하의 업무정지</li> <li>3.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의 일부정지</li> <li>4. 견책</li> </ol> <p>③ 관세청장이 관세사의 징계의결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그</p>

	<p>관세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p> <p>④ 징계의결 요구를 통보받은 관세사는 관세사징계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까지 제9조제3항의 합동사무소 또는 새로운 사무소를 설치하거나 다른 관세사 또는 직무보조자를 채용할 수 없다.</p> <p>⑤ 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p> <p><b>제28조(관세사징계위원회)</b> ① 관세사에 대한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관세사징계위원회를 둔다.</p> <p>② 관세사징계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공인노무사	<p><b>제20조 (징계)</b>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개업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6조를 위반하여 2개 이상의 사무소를 설치·운영한 경우</li> <li>2. 제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노무법인의 사원이 된 경우</li> <li>3. 제7조의9에 따른 경업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li> <li>4.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직무보조원을 둔 경우</li> <li>5. 제12조에 따른 품위유지와 성실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li> <li>6.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금지 행위를 한 경우</li> <li>7. 제14조에 따른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li> <li>8.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li> <li>9. 제20조의3에 따른 자격대여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li> <li>10. 노무법인·합동사무소를 설립·운영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빌린 경우</li> <li>11.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중대한 과실로 의뢰인이 부정하게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보험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거나 보험료 납부, 그 밖에 금전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게 한 경우</li> <li>12. 제3항제2호에 따른 직무정지처분을 위반하여 직무를 수행한 경우</li> </ol> <p>② 개업노무사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하고 폐업신고를</p>

한 때에도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징계처분을 한다.

③ 개업노무사 및 제2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공인노무사(이하 "개업노무사등"이라 한다.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취소
2. 3년 이하의 직무정지
3.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4. 견책(譴責)

④ 제24조에 따른 공인노무사회는 개업노무사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개업노무사등의 징계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징계의결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하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개업노무사등이 제3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⑦ 징계의결의 통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2(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 ① 공인노무사에 대한 징계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3 (자격대여행위 등의 금지)** 공인노무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대여(貸與)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 (청문)**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7조의6에 따른 설립인가 취소 등
2.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

<p>공인회계사</p>	<p><b>제48조(징계)</b> ①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2항에서 정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li> <li>2. 감사 또는 증명에 증대한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때</li> <li>3. 공인회계사회회칙에 위반한 때</li> <li>4.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인회계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li> </ol> <p>② 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등록취소</li> <li>2. 2년이하의 직무정지</li> <li>3. 1년이하의 일부직무정지</li> <li>4. 견책</li> </ol> <p>③ 공인회계사회는 회원인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의 소속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1항 각호의 1의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당해 공인회계사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p> <p>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p> <p>⑤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세무사</p>	<p><b>제17조(징계)</b>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2항에서 정하는 징계를 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이 법을 위반한 경우</li> <li>2. 세무사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li> </ol> <p>② 세무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등록취소</li> <li>2. 2년 이내의 직무정지</li> <li>3.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li> <li>4. 견책(譴責)</li> </ol> <p>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 요구된 세무사가 제7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p>

	<p>여 제6조에 따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p> <p>④ 해당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계를 할 수 없다.</p> <p>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사가 제2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p> <p>⑥ 세무사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

#### ④ 타 자격사법 비교 분석

변리사법 제16조(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에 따르면 ‘변리사시험에 관한 사항 및 변리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특허청에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를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변리사의 징계에 관해서는 특허청에서 징계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반면에 변호사의 징계에 관해서는 변호사협회의 자율권이 인정·보장되고 있는 실정이다. 변호사법 제92조(변호사징계위원회의 설치)에 따르면 ‘변호사의 징계는 변호사징계위원회가 하며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에 각각 변호사징계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다. 변호사법 제92조의2(조사위원회의 설치)에서 ‘변호사의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조사위원회를 두며 조사위원회는 필요하면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당사자나 관계인을 면담하여 사실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라고 되어 있다. 즉, 변호사협회에서 자율권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변호사법 제93조(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구성)에 의하면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이하 "변협징계위원회"라 한다)는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 2명,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2명, 대한변호사협회 총회에서 선출하는 변호사 3명,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변호사가

아닌 법학 교수 및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각 1명으로 구성하여 대한변호사협회가 주도적으로 변호사징계위원회를 구성함을 알 수 있다.

법무부도 변호사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변호사법 제94조(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구성)에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이하 "법무부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위원 8명으로 구성하며, 예비위원 8명을 두며,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되고, 위원과 예비위원은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 중에서 각 2명, 검사 중에서 각 2명, 대한변호사협회의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중에서 각 1명과 변호사가 아닌 자로서 법학 교수 또는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각 3명을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의 경우 검사 2명 중 1명은 법무부차관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제95조(변협징계위원회의 심의권)에 ‘변협징계위원회는 제91조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징계 사건을 심의하고 변협징계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조사위원회에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6조(법무부징계위원회의 심의권)에 ‘법무부징계위원회는 변협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한다’라고 규정하여 변협과 법무부가 변호사징계심의와 조사에 유기적으로 공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변호사법이 시사하는 바는 변리사의 경우도 이를 준용하여 변리사에 대한 징계를 변리사회와 특허청이 함께 진행해나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법무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등은 주무부처인 법무부, 관세청,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에 징계위원회를 설치하여 징계 심의 및 의결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공인회계사의 경우는 공인회계사회가 회원인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의 소속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가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당해 공인회계사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 4. 전문성 제고 위한 변리사 실무수습 및 의무연수 강화

### 1) 현황 및 문제점

변리사 실무수습·연수제도 등 변리사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를 운영 중이나, 수요자가 원하는 변리사 실무능력 요구에는 미흡한 실정이다.<sup>33)</sup>

### 2) 개선 방안

단계별 교육과정 고도화 및 실무 위주 교육을 통해 변리사의 실무역량 및 지식재산 분쟁대응 전문역량을 강화한다.

변리사 의무연수에 분쟁대응과정이 필요하고 로스쿨 연계방안처럼 변리사도 인턴십 과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의무연수에서 기술분야별 전문교육도 실시하여 전문변리사 도입 구체화 한다.

변리사회 연수 이후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을 통한 중간교육 등 실무수습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

실무수습 강화 위해 실무수습 교육에 대한 만족도 분석 등을 통해 단계별 교육과정 고도화 및 실무 위주 교육 실시한다. 이를 위해 특허청 인턴십 과정 운영 등을 통해 실무수습 교육 효과를 제고하고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 기간의 연장을 제안한다.<sup>34)</sup>

의무연수 강화를 위해 법률시장개방 대응 및 해외 법률서비스 시장 진출 능력 향상을 위한 변리사 의무연수 교육 고도화를 지향한다. 이를

33) 변리사 실무수습 만족도: 59.1점('11, '12평균)

34) 변리사회의 2개월 집합교육 후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중간교육 실시

위해 대한변리사회 주관으로 무료의무연수를 확대한다. 또한 기술가치 평가, 분쟁대응 및 기술분야별 전문교육을 운영한다.

### 3) 기대 효과

변리사시험 합격생에 대한 실무수습 및 등록 변리사들에 대한 의무연수 강화를 통해 변리사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다.

## 5. 전문성 강화 위한 전문변리사 제도 도입 필요

### 1) 현황 및 문제점

변리사 정보공개제도 도입('11.11.25.)에 따라 변리사는 자신의 전문분야, 의무연수 수료, 학력, 경력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되어 있다. 즉, 상표, 전기, 기계, 화학 분야에 대해 주전공분야 1개는 필수로 공개하고, 나머지 분야는 우선순위를 두어 선택적으로 부전공분야로 공개한다.

정보공개는 수요자의 변리사 선임 편의를 위한 제도로, '전문변리사'로 표시하고 광고할 수 있는 전문변리사 제도와는 차이가 있다.

전문변리사 자격시험을 새로 통과해야 한다면 변리사들의 반발이 결코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갈등을 줄이고 변리서비스의 전문화·고도화를 위해 새로운 시험보다는 변호사 경우처럼 자격심사위원회를 통해 경력, 출원건수 등으로 심사해서 '전문변리사'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이 적절할 것으로 평가된다.

### 2) 개선 방안

기술분야별 전문변리사 제도 도입을 통해 변리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수요자의 변리사 선택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특허청(혹은 대한변리사회)의 자격인증을 통한 전문변리사 제도를 도입한다.

지원자격은 변리사 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3년(혹은 5년) 이상인 자 중 일정 건수 이상의 출원 및 심판 업무를 대리한 자로 한다.

심사는 특허청(혹은 대한변리사회, 혹은 민관합동)에 ‘전문변리사 자격심사위원회’를 두어 기준을 마련하고 전문변리사 심사를 통한 자격을 부여한다.

명칭은 전문변리사 자격자에 한해서 ‘\*\* 분야 전문변리사’ 명칭 사용을 허가한다.

### 3) 기대 효과

‘전문변리사’ 자격부여를 통해 변리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수요자의 변리사 선택 접근도 향상

## 6. 변리사의 자치권 확대 방향

### 1) 현황 및 문제점

대한변리사회의 자치권은 변리사 등록업무 수행, 실무수습 등 연수 관리 및 징계권을 통해 행사 가능하다. 즉, 변리사 실무수습은 ‘11.6, 등록업무는 ‘12.6에 각각 대한변리사회로 위탁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대한변리사회의 징계가 실효성이 없어 자율적인 회원관리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대한변리사회 징계위

원회의 징계처분은 경고, 3년 이하의 피선거권 제한, 제명의 형태를 갖고 있다.

그러나 현재 개정된 변리사법에 따른 대한변리사회의 자율적 징계권 강화로 인해 변리사들의 문제가 많은 부분 해소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매우 논란이 크다.

현재 변리사회는 변리사 시험 출신만을 위한 이익단체로만 존재하여 징계의 범위 내지 실효성이 일반 상식에 반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변리사 시험 출신이 아닌 변호사로서 변리사 등록을 한 자를 배척하거나 특허청 출신 변리사의 이사 선임에서 배제 등이 있어 과연 변리사회에 자체 징계권을 부여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다.

변리사 징계권 일부를 대한변리사회로 이관하여 대한변리사회의 자치권 확대 및 회원관리 강화가 충분히 가능한가를 먼저 분석한 다음 충분하지 않다고 판명되면 자치권 확대는 현재로서는 시기상조의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자치권 확대는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2) 개선 방안

변리사 징계권 일부를 대한변리사회로 이관한다. 먼저 변리사에 대한 1차 징계권을 변리사회 징계위원회로 이관하고, 특허청은 이에 대한 이의 신청 사건을 심의(변호사와 유사)하는 체계를 갖춘다. ‘변리사징계양정 규정’을 적용하여 심의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변리사 징계를 위한 조사권한을 규정하여 특허청장에게 변리사 조사 권한을 부여하되, 이를 변리사회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여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 3) 검토 사항

자치권의 핵심인 등록업무와 징계권을 대한변리사회에 이관함으로써 대한변리사회의 자율적 회원관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변리사회는 변리사 시험 출신만을 위한 이익단체로만 존재하여 징계의 범위가 일반 상식에 반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징계권한을 변리사회에 이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 사료된다.

따라서 대한변리사회가 공정하고 공평한 징계절차 및 징계결과를 얻을 때까지 징계권한 등은 특허청이 갖고 변리사회의 자율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될 때 징계권을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된다.

## [참고문헌]

- 고영선 외(2010), “전문자격사 규제개혁의 필요성과 방향”, K D I FOCUS, (통권 제4호)
- 김기형 외(2013),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전문자격사분야)」, 공정거래위원회 연구보고서.
- 김상일 외(2009), 「전문자격사 제도선진화 추진을 위한 변리사 제도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특허청 연구보고서
- 김홍엽(2010), “변호사와 법조유사자격사 간의 동업의 문제”, 人權과正義, (통권 제412호), 4-6면.
- 박경재(2011), “변호사는 의제상인이 아닌가”,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36집』, 107~130면
- 성시영(2010),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제에 관한 헌법적 문제”, 『CLS LAW REVIEW Vor-jurist 제1권 제2호』
- 유길종(2015.8.31.), “변호사가 상인인가?”, 전북시론, 전북도민일보.
- 정영화(2011), “국가의 시장개입의 한계와 재판심사기준”, ‘한국제도경제학회’ 월례주제발표 논문
- 정영환·배상철(2001), 「변리사제도 개선방안연구」,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권연구센터 연구보고서 2001-03
- 정한중(2011), “변호사 보수의 규제에 대한 연구”, 『仁荷大學校 法學研究 第14輯 第1號』, 85~122면
- 정형근(2010),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 『漢陽法學 第21卷 第2輯』, 195~221면.
- 정형근(2009), “변호사의 직업윤리에 대한 고찰”, 『法曹 研究論文 (Vol.633)』
- 조한상(2009), 『공공성이란 무엇인가』, 책세상문고·우리시대 120.

최남석(2013), “법률서비스 시장개방과 규제개혁의 경제적 효과 분석”, 『규제연구 제22권 제1호』, pp. 95-129.

홍성수(2012), “로펌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시론”, 『법과사회 43호』, pp. 297-328.

이경원, “한국 법조의 자율성과 공공성” 『경제와 사회 제86호』, pp. 125-161.

이진수, “변리사는 상인이 아니다”, 특허와 상표(2015.2.27.)

정태인(2012), “공공성, 시장에서는 해결할 수 없어”,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2012.7.12. 칼럼)

**[별첨 1] 변리사 관련 민원 현황(광고 관련)**

접수일자	민원신청 경로	민원요지	처리일자
2012-01-16	기관 홈페이지	네이버에서 광고되고 있는 허위특허법 률사무소 신고	2012-01-20
2012-04-10	기관 홈페이지	특허사무소의 허위표시광고에 대한 조치 요청	2012-04-16
2012-10-08	국민 신문고	특허사무소의 인터넷 허위 광고행위에 대한 제재요청	2012-10-11
2012-11-20	국민 신문고	변리사사무소의 불공정 광고 제재 요청	2012-11-20
2015-01-05	국민 신문고	변리사의 불법 광고 신고(타지역서비스)	2015-01-09
2015-01-08	국민 신문고	불법 광고에 대한 확인 및 제재 요청(특 허법인***)	2015-01-09
2015-01-09	국민 신문고	불법 광고에 대한 확인 및 제재 요청(특 허법인***)	2015-01-09
2015-01-13	국민 신문고	불법 광고에 대한 확인 및 제재 요청(특 허법인***)	2015-01-14

**[별첨 2] 변리사 관련 민원 현황(부실대리 관련)**

접수일자	민원신청경로	민원요지	처리일자
2006-11-28	국민신문고	변리사법 위반여부 판단	2006-12-01
2007-03-23	기관홈페이지	실용신안, 디자인 연차료 관리 소홀	2007-03-27
2007-03-27	국민신문고	변리서비스 관련 진정	2007-03-30
2007-03-27	국민신문고	변리서비스 관련 진정	2007-03-30
2007-05-17	서신	변리사 위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실규명 및 처벌 요청	2007-05-21
2007-06-14	국민신문고	변리사에게 신속한 출원서 작성 요청	2007-06-18
2007-06-14	서신	변리사의 위임장 위조에 대한 진정	2007-06-21
2007-06-29	국민신문고	변리사에게 신속한 출원서 작성 요청	2007-06-29
2007-10-25	서신	변리사사무소 직원 과실로 인한 특허 거절	2007-10-31
2008-06-11	서신	특허수수료 납부착오로 피해 발생	2008-06-11

2008-08-07	서신	변리사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 발생	2008-08-20
2008-09-22	기관홈페이지	민원인의사에반하여포괄위임장작성한변리사해 임요청	2008-09-26
2008-11-06	기관홈페이지	변리사의 부적절한 행위 근절 요구	2008-11-13
2008-12-01	국민신문고	변리사 과실에 대한 조사 및 확인 요청	2008-12-08
2008-12-02	국민신문고	변리사 과실에 대한 확인 및 징계 요구	2008-12-08
2008-12-14	서신	국제출원 대행 사기에 대한 진정	2008-12-22
2009-01-30	서신	변리사 행위의 위법여부 질의	2009-02-03
2009-06-03	서신	변리사의 보정서 작성 오류로 인한 피해 발생	2009-06-09
2009-06-10	서신	외국출원 대행 수수료 미지급	2009-06-16
2009-07-09	국민신문고	변리사의 불충실한 출원서 작성으로 인한 피해 발생	2009-07-15
2009-07-14	서신(대통령실)	변리사의 불충실한 출원서 작성으로 인한 피해 발생	2009-07-15
2009-08-04	기관홈페이지	변리사의 업무지연 관련 문의	2009-08-05
2009-08-27	국민신문고	변리사에 대한 징계 요구	2009-09-01
2009-09-08	서신	변리사의 불성실한 출원절차 전달 및 고지	2009-09-11
2009-09-08	서신	변리사 문서조작 진정	2009-09-11
2009-09-18	기관홈페이지	변리사의 불성실한 대리행위	2009-09-21
2009-10-09	기관홈페이지	심결문 왜곡하여 경고장 발송	2009-10-09
2009-10-22	서신	특허권 소멸에 대한 변리사 책임	2009-10-26
2010-03-30	서신(대통령실)	변리사 문서조작 진정	2010-04-06
2010-04-27	국민신문고	쌍방대리 행위 근절요청	2010-04-28
2010-05-03	기관홈페이지	변리사 윤리 개선에 대한 문의	2010-05-06
2010-08-10	서신	변리사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진정	2010-08-12
2010-08-12	기관홈페이지	변리사 부당행위에 대한 진정	2010-08-12
2010-10-25	기관홈페이지	변리사법 위반에 따른 처벌 요청	2010-10-28
2010-11-01	기관홈페이지	변리사 징계 요구	2010-11-04
2010-11-22	국민신문고	부정변리사 처벌 요구	2010-11-26

2010-12-01	기관홈페이지	부정변리사 처벌 요구	2010-12-07
2010-12-10	국민신문고	변리사 관련 자료 요청 및 처벌 문의	2010-12-16
2010-12-11	기관홈페이지	변리사 관리 소홀로 인한 권리 소멸 및 해외 대리인비용 착복	2010-12-23
2011-05-02	기관홈페이지	변리사 불성실 업무	2011-05-06
2011-05-27	기관홈페이지	변리사 비리신고	2011-06-01
2011-06-14	기관홈페이지	변리사 사무소의 탈법 영업행위 신고	2011-06-20
2011-06-15	기관홈페이지	변리사 관리 소홀로 인한 권리 소멸 및 해외 대리인비용 착복	2011-06-20
2011-06-15	기관홈페이지	공동출원인 동의 없이 특허출원 취하	2011-06-21
2011-06-27	국민신문고	변리사법 위반 변리사 처벌 요청	2011-07-01
2011-08-11	기관홈페이지	과도한 수임료 청구에 따른 변리사 제재 요청	2011-08-17
2011-08-11	기관홈페이지	변리사 수임료 환불 여부 및 방법	2011-08-17
2011-11-07	국민신문고	대리인의 변리사법 제8조 위반 여부	2011-11-07
2011-11-28	국민신문고	변리사법 위반 여부 및 수임료에 대한 손해 배상청구 가능 여부	2011-12-02
2011-11-25	기관홈페이지	특허거절이유통지서를 알리지 않은 변리사에 대한 제재 조치	2011-12-07
2011-12-05	국민신문고	변리사가 자신의 업무를 다른 변리사에게 맡긴 것에 대한 제재 조치	2011-12-12
2012-01-09	기관홈페이지	변리사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제재 요청	2011-12-27
2012-05-15	국민신문고	책임 의식 없는 변리사 신고	2012-05-18
2012-08-06	국민신문고	변리사의 사건수임료에 대한 사전안내 미흡	2012-08-09
2012-08-27	국민신문고	변리사의 일처리 미숙으로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 주장	2012-09-03
2012-10-17	기관홈페이지	기존에 해당 기술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지 않은 변리사에 대한 불만	2012-10-18
2010-10-25	국민신문고	특허출원대리계약 취소 시 환불 금액에 대한 불만	2012-10-29
2010-11-06	국민신문고	*** 변리사의 변리사법 위반 여부에 대한 확인 요청	2012-11-12
2012-11-14	국민신문고	변리사 관련 민원	2012-11-14
2012-12-11	국민신문고	변리사 만행 진정 요청	2012-12-12
2013.01-11	국민신문고	특허사무소의 출원 전 선행기술조사 의무	2013-01-14

2013-01-14	국민신문고	특허사무소의 출원 전 선행기술조사 의무	2013-01-14
2013-04-17	국민신문고	특허법인 ***에 대한 징계요청	2013-04-22
2013-06-10	국민신문고	특허청의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위반 여부 확인	2013-06-13
2013-06-11	서신	실용신안 의뢰 거부 후 유사상품 출시로 변리사의 부정행위 의심	2013-06-13
2013-07-08	국민신문고	변리사에 대한 징계 재촉	2013-07-11
2013-08-06	국민신문고	*** 변리사 징계 재촉	2013-08-06
2013-08-16	국민신문고	변리사 수입료 등의 환불 지연으로 인한 불만 호소	2013-08-19
2013-10-10	국민신문고	변리사가 발명자의 아이디어를 도용하여 출원할 경우 처벌과 권리회복 가능성	2013-10-10
2013-10-28	국민신문고	변리사의 부정행위가 의심됨	2013-11-01
2013-01-09	국민신문고	변리사 사무소의 업무처리에 대한 불만	2014-01-10
2013-01-27	서신	변리사가 성실하게 대리하지 않아 출원건이 거절결정됨에 따른 보상 요구	2014-01-27
2014-02-17	서신	변리사에 대한 처벌 요구	2014-02-17
2014-02-28	서신	변리사와 사무직원에게 대한 징계요청	2014-03-03
2014-03-04	국민신문고	변리사의 불성실한 대리로 입은 피해보상 및 징계 요청	2014-03-05
2014-03-18	서신	변리사법 위반 확인	2014-03-19
2014-04-18	변리사회 이송	변리사의 불성실 대리로 인한 특허출원 거절결정	2014-05-12
2014-05-08	국민신문고	변리사법 제2조 문의	2014-05-12
2013-05-28	국민신문고	상표 출원 전 등록상표 조사를 하지 않은 변리사에 대한 불만	2014-05-30
2014-11-10	국민신문고	변리사의 불성실한 대리에 대한 징계 요구	2014-11-13
2014-11-14	국민신문고	불성실하게 대리한 변리사에 대한 조사 및 환불 요구	2014-11-17
2014-11-20	국민신문고	선행기술조사를 하지 않은 변리사에 대한 불만	2014-11-21
2014-12-04	국민신문고	변리사에 대한 조사 및 징계 요청	2014-12-05
2014-12-01	국민신문고	일부러 주소를 틀리게 출원하여 추가로 수입료를 요구하는 변리사에 대한 불만	2014-12-02
2016-05-11	국민신문고	특허법인 *** 변리사의 횡포	2016-05-24
2016-11-18	국민신문고	***특허 사무소에 당한 부당대우	2016-11-27

**[별첨 3] 징계종류 및 사항**

출신	징계일자	징계종류	징계사유	비고
1	2001.04.20	견책	○ 성실대리의무 위반(실용신안출원이 등록사정되었음에도 대리인인 변리사가 그 사실을 출원인에게 통보하지 않아 등록료 미납으로 등록포기 됨)	
1	2002.08.21	경고	○ 직원이 심사관에 금품제공시도 변리사법 제8조의4(사무직원) 위반	
3	2003.10.17	견책	○ 심사관(아**)에게 금품제공시도 및 적발	총리실 적발
3	2005.06.02	과태료(100만)	○ 특허청공무원에 대한 향응 제공	국무조정실 정부합동점 검반에 적발
3	2005.09.26	업무정지1년	○ 대리권 남용, 해외대리인 비용 송금지연 및 번역문 결함	서울행정법원2005구합 32743에 의하여 '06.6.1 취소
3	2006.04.21	과태료(300만)	○ 디자인보호법 제8조의 신규성 상실의 예외규정 관련 주의의무위반	동일인
3	2006.07.11	업무정지 3개월	○ 대리권 남용, 해외대리인 비용 송금 지연 등	2007.3.15~6.14
3	2009.03.24	과태료(300만) (단,유사사건 재발시가중 처벌)	○ 사무직원인 우선심사청구를 위해 공문서(벤처기업확인서) 변조한 사무직원 지도감독 소홀책임	
3	2010.07.06	과태료(300만) (단,유사사건 재발시가중 처벌)	○ 국내출원비용 지원을 받기 위해 공문서(수수료 납부확인서)를 변조한 사무직원 지도감독 소홀 책임	
2	2010.07.06	일부업무정지 2년	○ 법률사무소와 별도로 특허법률사무소를 4년이상 설치,운영함으로써 이중사무소 설치 금지 규정 위반	2010.7.6~2012.7.5
	2010.12.01	과태료(500만)	○ 사유 미기재	
1	2011.09.23	등록취소	○ 지재권 유지관리 소홀로 인해 총9건의 해외특허권 및 상표권 소멸 ○ 해외 상표출원에 대하여 출원인	

			으로부터 받은 등록료 및 해외대리인 수수료 등을 해외 대리인에게 미송금	
1	2011.09.23	일부업무정지 3월	○ 특허법인의 구성원으로서 약 7개월간 별도의 특허사무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으며, 특허법인에 구성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동안 법인 명의로 아닌 본인 명의로 사건을 수임하여 변리업무 수행	2011.9.23~1 2.22
1	2013.09.11	견책	○ 사무소를 2회 이전하였으나 이를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여 변리사법 제6조의2(사무소 설치)를 위반함	
1	2014.08.18	전무업무정지 3월	○ 출원인으로부터 특허 출원 2건을 수임하였으나 출원인과 상의도 없이 의견제출통지서에 대한 대응을 하지 않아 특허 출원 2건이 모두 최종 거절결정됨	2014.8.18~1 1.17
1	2014.08.18	일부업무정지 1년	○ 출원인으로부터 받은 관납료 및 대리인 수수료를 해외대리인에게 제대로 송금하지 아니하고, 해외출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미국·일본 특허출원 2건이 모두 최종 거절결정됨	2014.8.15~2 015.8.17
1	2015.08.18	과태료 (150만원)	○ 출원인으로부터 실용신안출원을 의뢰받아 대리업무를 진행하면서, 심사관의 의견제출통지 사실을 출원인에게 알리지 않고 일부청구항을 임의로 삭제하여 등록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출원인의 의사에 반하여 권리범위를 축소시킨 점이 인정됨	2015.8.18

[별첨 4] 변리사 광고 사례

특허 : 네이버 통합검색 - Internet Explorer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query=%ED%8F

파일(F) 편집(E) 보기(V) 즐겨찾기(A) 도구(T) 도움말(H)

**NAVER** 특허 검색

통합검색 | 어학사전 | 이미지 | 뉴스 | 블로그 | 지식백과 | 책 | 지식iN | 더보기

정렬 · 기간 · 영역 · 옵션유지 |   | 상세검색 ·

추천검색어 ? 특허출원 특허청상표등록조회 표준특허 특허등록비용 유럽특허 특허신청 특허조회 특허상담 발명특허 미국특허 중국특허 상표특허 특허출원검색 더보기

**특허정보검색서비스** [www.kipris.or.kr](http://www.kipris.or.kr)  
 - 지식재산권 통합검색 | KIPRIS | TODAY KIPRIS | PR | 고객센터 | 위치  
 국내외 특허, 상표, 디자인 정보 검색 및 선행기술조사분석, 상표조사, 번역 등 특허 서비스 안내.

**파워링크 '특허' 관련 광고입니다.** [클릭초이스 등록 >](#)

**특허 전문 아이디어포유** [www.i4y.co.kr](http://www.i4y.co.kr)  
 100%특허확보보장 15년경력변리사9인 아이디어업그레이드 사업/전략적 특허확보전문

**대기업건 팀장출신,소담특허** [www.sodamip.kr](http://www.sodamip.kr)  
 대기업건 우수대리인상 수상, 대기업 소송15년 팀장역임, 변리사 출신의 변호사

**특허 아이니드패턴트** [www.ineedpatent.com](http://www.ineedpatent.com)  
 높은 성공률의 특허 전문, 전문변리사의 365일 무료상담, 중소기업우대.

**비즈팻 특허** [bizpatt.com/](http://bizpatt.com/)  
 개발한 내 아이디어, 전문 특허상담 추천!, 신속정확 특허검토안 마련

**홍병의국제특허법률사무소** [www.hongpatent.com](http://www.hongpatent.com)  
 200여년 경험 특허등록 전문, 무료상담, 신속, 저렴


**변리사 직접 상담하는 e특허** [www.cwpat.co.kr](http://www.cwpat.co.kr)  
 대표 변리사 직접상담, 특허, 개인 및 중소기업 전문 특허사무소.

**특허상담 스피드특허** [speedpat.com](http://speedpat.com)  
 94%등록성공률! 특허5영업일/디자인상표1일내출원! 아이디어만으로 자체설계 완성!

**특허청 특허 특허넷 특허 한국**  
 특허, 실용신안등록, 의장등록, 상표등록, 무료특허검색, 저렴한등록비용.

**든든한 사업파트너 다정특허** [www.dajeongip.kr](http://www.dajeongip.kr)  
 등록은 기본 강한권리보호! 꼼꼼하고 정확한 변리사와 1:1 친절상담!

**사랑특허법률사무소** [www.sarangip.com](http://www.sarangip.com)  
 BM, 기계, 화학 국제특허 전문, 고품격 상담, 고객과 함께하는 사랑특허

파워링크 '특허' 관련 광고입니다. 

[클릭초이스 등록 >](#)

[특허 전문 아이디어포유](#) [www.i4y.co.kr](http://www.i4y.co.kr)

100%특허확보보장 15년경력변리사9인 아이디어업그레이드 사업/전략적 특허확보전문

[대기업건 팀장출신,소담특허](#) [www.sodamip.kr](http://www.sodamip.kr)

대기업건 우수대리인상 수상, 대기업 소송15년 팀장역임, 변리사 출신의 변호사

[특허 아이니드패턴트](#) [www.ineedpatent.com](http://www.ineedpatent.com)

높은 성공률의 특허 전문, 전문변리사의 365일 무료상담, 중소기업우대.

[비즈пат 특허](#) [bizpatt.com/](http://bizpatt.com/)

기발한 내 아이디어, 전문 특허상담 추천!, 신속정확 특허검토만 마련

[홍병의국제특허법률사무소](#) [www.hongpatent.com](http://www.hongpatent.com)

20여년 경험 특허등록 전문, 무료상담, 신속, 저렴

[변리사 직접 상담하는 e특허](#) [www.cwpat.co.kr](http://www.cwpat.co.kr)

대표 변리사 직접상담, 특허, 개인 및 중소기업 전문 특허사무소.

[특허상담 스피드특허](#) [speedpat.com](http://speedpat.com)

94%등록성공률! 특허5명영업/디자인상표1일내출원! 아이디어만으로 자체설계 완성!

[특허청 특허 특허넷 특허.한국](#)

특허, 실용신안등록, 의장등록, 상표등록, 무료특허검색, 저렴한등록비용.

[든든한 사업파트너 다정특허](#) [www.dajeongip.kr](http://www.dajeongip.kr)

등록은 기본 강한권리보호! 꼼꼼하고 정확한 변리사와 1:1 친절상담!

[사랑특허법률사무소](#) [www.sarangip.com](http://www.sarangip.com)

BM, 기계, 화학 국제특허 전문, 고품격 상담, 고객과 함께하는 사랑특허

7.  **사랑특허법률사무소**  
 BM, 기계, 화학 국제특허 전문, 고품격 상담, 고객과 함께하는 사랑특허  
<http://www.sarangip.com>  
 광고집행기간  37~60개월
8.  **특허 큐브특허**  
 개인 및 중소기업을 위한 특허/실용신안 전문 Boutique Firm  
<http://www.cubepat.com>  
 광고집행기간  13~24개월
9.  **한국생산성본부 기업법무 교육 N 프로그램**  
 한국생산성본부 기업법무 전문가 육성 교육 특허  
<http://www.kpc.or.kr>  
 광고집행기간  13~24개월
10.  **대전 새누리국제특허법률사무소**  
 기술,기계,해외특허전문, 실용신안등록, 특허청출신변리사, 높은성공률, 출장방문상담  
<http://snpatent.co.kr>  
 광고집행기간  13~24개월
11.  **특허 잇츠특허상표 IT**  
 분야별 전문변리사가 직접 무료상담, 아이디어 구체화 지원, 중간사건무료, 전국출장  
<http://www.itspatent.com>  
 광고집행기간  4~12개월
12.  **중소기업진흥센터**  
 연구소설립, 벤처, 정책자금, 운영자금, 이노비즈, 메인, 부품, 노무, R&D  
<http://1004help.co.kr>  
 광고집행기간  13~24개월
13.  **특허 김영동특허법률사무소**  
 특허 상담, 특허검색, 등록가능성 진단, 저렴한 비용, 높은성공률  
<http://www.kydpat.co.kr>  
 광고집행기간  61개월 이상
14.  **로 비 스 전화법률상담센터**  
 현직 변호사와 직접 통화 종합법률상담, 특허, 변호사와 지급 상담가능.  
<http://www.lawvis.com/>  
 광고집행기간  25~36개월
15.  **전화법률상담전문 LawARS**  
 법조경력풍부 변호사단 24시간 전화상담, 무료센터운영, 특허, 법무법인  
<http://www.lawars.com>  
 광고집행기간  37~60개월

16.  **전화법률상담전문 TELLAW**  
 변호사단의 신속 시원한 답변, 24시간 전화상담, **특히**, 무료센터운영  
<http://www.telelaw.net>  
 광고집행기간  6개월 이상
17.  **특허 태산**  
 특허전문, 탁월한 성공율, 착한 수수료, 등록가능성 무료진단  
<http://www.tspat.co.kr/>  
 광고집행기간  25~36개월
18.  **특허, PCT다이렉트**  
 다이렉트라 저렴하고 국제특허전문이라 정확한 PCT다이렉트. 실시간셀프견적,카드결제  
<http://www.pctdirect.co.kr>  
 광고집행기간  4~12개월
19.  **전화법률상담전문 LAW911**  
 법조경력 풍부다양 변호사들 빠른전화상담, 무료센터운영, **특히**,법무법인  
<http://www.law911.net>  
 광고집행기간  37~60개월
20.  **신개념 비즈니스 쇼핑물 원탑**  
**특히**, 상표, 실용신안, 디자인 출원, **특히**, 정책자금 연계 컨설팅까지  
<http://www.1tap.co.kr>  
 광고집행기간  13~24개월
21.  **특허파트너 변리사 아이앤비**  
**특허** 전국출장, **특허**비용지원, **특허**전문 변리사, 평생**특허** 파트너, 심판소송전문.  
<http://www.inbpat.com>  
 광고집행기간  6개월 이상
22.  **특허법인 해담(수원사무소)**  
 수원 인계동(수원시청) 소재, 변리사 방문 맞춤형 무료상담 가능, 각종법률 컨설팅  
<http://www.patguide.com>  
 광고집행기간  37~60개월
23.  **특허법인 참좋은**  
 심사관, 심판관 출신 7명의 변리사가 전공분야 별 맞춤 무료상담 및 선행기술 검토  
<http://www.goodpat.co.kr>  
 광고집행기간  4~12개월
24.  **G마켓 특허**  
**특히**, 특가SALE, 누구나 할인쿠폰 증정! 쇼핑을 다 담다 G마켓  
<http://www.gmarket.co.kr>  
 광고집행기간  6개월 이상

26.  **특허 AK몰**   
모든 고객 최대 7% 할인쿠폰, 브랜드 특가 기획전, 카드사별 최대15%혜택.  
<http://www.akmall.com>  
광고집행기간  6개월 이상
27.  **가격비교 사이트 다나와**   
컴퓨터, 가전제품에서 자동차까지 종합 가격비교사이트, 최저가격비교 다나와!  
<http://www.danawa.com>  
광고집행기간  0~3개월
28.  **특허쟁이의 지식참고**  
어려운 특허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주는 진짜 특허전문가를 만나세요  
[http://blog.naver.com/jk\\_patent](http://blog.naver.com/jk_patent)  
광고집행기간  4~12개월
29.  **디앤특허사무소**  
특허, 특허, 디자인, 출원, 심판, 소송, 선행기술조사, 특허맵, 기술이전  
<http://www.dnpat.com>  
광고집행기간  25~36개월
30.  **브레인 국제특허**  
특허등록 노하우 보유, 특허 친절 상담, 가산,구로,광명 당일 상담  
<http://brainasset.net>  
광고집행기간  37~60개월
31.  **온라인간편 상표등록 마크인포**   
특허청 DB 무료상표검색사이트, 단 10분의 간편한 신청절차, 수수료 4만원  
<http://www.markinfo.co.kr>  
광고집행기간  13~24개월
32.  **특허 인터파크도서**  
누구나 26,000원할인 + 2017카レンダー 증정, 최대 30%할인 특가 쉐일!  
<http://book.interpark.com/>  
광고집행기간  6개월 이상
33. **특허비용 직접선택 특허플러스**  
이제 내가 특허비용을 선택한다 / 당신의 특허가 플러스가 되는 곳 특허플러스  
<http://www.patplus.co.kr>  
광고집행기간  0~3개월

**연관검색어** ? [변리사 시험](#) [합격의법학원 변리사](#) [특허법인 변리사](#) [하는일 변리사](#) [연봉 변리사](#) [연봉 변리사](#) [BM특허 변리사](#) [최연소 특허신청](#) [특허법인 메이저 변리사](#) [공부 변리사](#) [신고](#) | [X](#)  
[특허상당](#) [BM특허](#) [변리사 최연소](#) [특허신청](#) [특허법인 메이저](#) [변리사 공부](#) [더보기](#)

파워링크 '변리사' 관련 광고입니다. ⓘ

[클릭초이스 등록](#) >

[추천 변리사 아이니드패턴트](#) [www.ineedpatent.com](http://www.ineedpatent.com)

높은 성공률의 변리사 전문, 전문변리사의 365일 무료상담, 중소기업우대.

[든든한 사업파트너 다정특허](#) [www.dajeongip.kr](http://www.dajeongip.kr)

등록은 기본 강한권리보호! 꼼꼼하고 정확한 변리사와 1:1 친절상담!

[홍병의국제특허법률사무소](#) [www.hongpatent.com](http://www.hongpatent.com)

20여년 경험, 특허, 상표, 실용신안, 디자인등록, 심판, 무료상담

[변리사 김종화 특허법률사무소](#) [www.hspatent.co.kr](http://www.hspatent.co.kr)

상표특허 법원 전문위원, 고검 심사위원 김종화 변리사가 100% 직접 상담합니다.

[변리사 직접 상담하는 e특허](#) [www.cwpat.co.kr](http://www.cwpat.co.kr)

대표 변리사가 1대1로 직접 상담하는 개인, 중소기업 전문 특허사무소입니다.

[변리사 큐브특허](#) [www.cubepat.com](http://www.cubepat.com)

개인 및 중소기업을 위한 특허/실용신안 전문 Boutique Firm

[변리사 김영동특허법률사무소](#) [www.kydpat.co.kr](http://www.kydpat.co.kr)

특허, 상표 상담, 검색, 등록가능성 진단, 저렴한 비용, 높은성공률

[강남합격의법학원 변리사강의](#) [www.byunnisa.com](http://www.byunnisa.com)

합격생강력추천 박준희 지구과학, 변상규 물리, 오양균 민법, 2차 박승수 민소법.


[변리사 비즈팻](#) [bizpatt.com/](http://bizpatt.com/)

등록률 높은곳!, 변리사특허출원 전문상담, 서비스 차별화, 합리적 비용!

[특허법인태산 무료진단서비스](#) [www.tspat.co.kr/](http://www.tspat.co.kr/)

등록가능성을 무료로 진단해 드립니다!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국제출원

[더보기](#) □

1.  **추천 변리사 아이니드패턴드**  
 높은 성공률의 변리사 전문, 전문변리사의 365일 무료상담, 중소기업우대.  
<http://www.ineedpatent.com>  
 광고집행기간  6개월 이상
2.  **든든한 사업파트너 다정특허**  
 등록은 기본 강한권리보호! 꼼꼼하고 정확한 변리사와 1:1 친절상담!  
<http://www.dajeongip.kr>  
 광고집행기간  4~12개월
3.  **홍병의국제특허법률사무소**  
 20여년 경험, 특허, 상표, 실용신안, 디자인등록, 심판, 무료상담  
<http://www.hongpatent.com>  
 광고집행기간  37~60개월
4.  **변리사 김종화 특허법률사무소**  
 상표특허 법원 전문위원, 고검 심사위원 김종화 변리사가 100% 직접 상담합니다.  
<http://www.hspatent.co.kr>  
 광고집행기간  6개월 이상
5.  **변리사 직접 상담하는 e특허**  
 대표 변리사가 1대1로 직접 상담하는 개인, 중소기업 전문 특허사무소입니다.  
<http://www.cwpat.co.kr>  
 광고집행기간  6개월 이상
6.  **변리사 큐브특허**  
 개인 및 중소기업을 위한 특허/실용신안 전문 Boutique Firm  
<http://www.cubepat.com>  
 광고집행기간  13~24개월
7.  **변리사 김영동특허법률사무소**  
 특허, 상표 상담, 검색, 등록가능성 진단, 저렴한 비용, 높은성공률  
<http://www.kydpat.co.kr>  
 광고집행기간  6개월 이상
8.  **강남합격의법학원 변리사강의**  
 합격생강력추천 박준희 지구과학, 변상규 물리, 오양균 민법, 2차 박승수 민소법.  
<http://www.byunrisa.com>  
 광고집행기간  6개월 이상
9.  **변리사 비즈팻**  
 등록률 높은곳!, 변리사특허출원 전문상담, 서비스 차별화, 합리적 비용!  
<http://bizpatt.com/>  
 광고집행기간  13~24개월

10.  **특허법인태산 무료진단서비스**  
 등록가능성을 무료로 진단해 드립니다!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국제출원  
<http://www.tspat.co.kr/>  
 광고집행기간  25~36개월
11.  **고려사이버대 법학과**  
 경찰, 사법에 특화된 교육과정, 로스쿨 진학대비, 신입입생 12/1~1/6까지!  
<http://go.cuk.edu>  
 광고집행기간  37~60개월
12.  **대전 새늘국제특허법률사무소**  
 기술특허전문, 기계특허, 해외특허, 실용신안등록, 특허청출신 **변리사**, 높은 성공률  
<http://snpatent.co.kr>  
 광고집행기간  13~24개월
13.  **변리사, 메가로스쿨**  
**변리사시험VS변호사시험**, 특허관련 업무 변호사출신 **변리사**가 더 유리한 결정적 이유  
<http://www.megals.co.kr>  
 광고집행기간  61개월 이상
14.  **변리사 상표통**  
 5프로 문과출신 상표전문**변리사**, 상표등록, 상표분쟁, 탁월한 등록률 및 승소율  
<http://www.mkpat.com>  
 광고집행기간  61개월 이상
15.  **변리사 고시마트**   
 교재할인판매, 요점정리**변리사**, 스프링분철, 배송이벤트, 주말배송  
<http://www.gosimart.com>  
 광고집행기간  61개월 이상
16.  **부산특허 특허법인 신태양**  
 부산, 경남특허사무소, 특허청 심사관, 특허심판원 소송수행관 경력의 전문**변리사**  
<http://www.styp.kr>  
 광고집행기간  61개월 이상
17.  **G마켓 변리사**  
**변리사**, 베스트셀러, 관련도서, 15%혜택, 인기음반, 제휴카드 추가할인  
<http://www.gmarket.co.kr>  
 광고집행기간  25~36개월
18.  **디앤특허사무소**  
**변리사**, **변리사**, 디자인, 출원, 심판, 소송, 선행기술조사, 특허맵, 기술이전  
<http://www.dnpat.com>  
 광고집행기간  25~36개월